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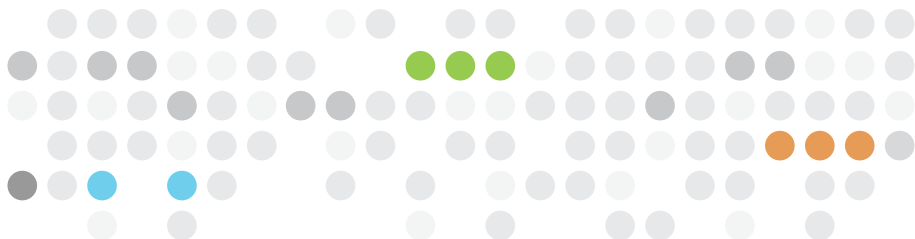
11-1620000-000185-14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 4 집
2011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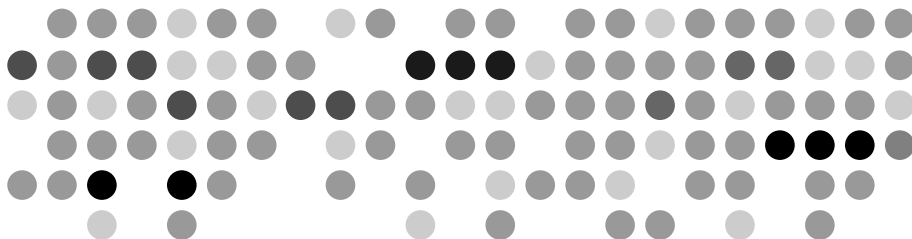
11-1620000-000185-14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 4 집
2011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발 간 사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조사와 구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어언 7년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성희롱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 한 해만도 212건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성희롱에 대해 우려하고 피해자 구제 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다양한 성희롱 사건과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희롱에 대해 관대한 측면에 있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여성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발전마저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여성 비하, 성적 대상화는 여성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간 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위원회는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그 네 번째를 발간합니다.

이번 네 번째 사례집에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간 위원회가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한 진정 사건 22건과 같은 기간 당사자간에 합의 종결된 26건을 수록합니다.

이 사례집이 성희롱 예방과 시정, 입법 활동, 정책 입안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성희롱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현병철

《 일러두기 》

- 이 사례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 22건을 실었습니다.

※ 출범 이후부터 2007년 5월까지 권고 결정한 사건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1집>,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권고 결정한 사건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권고 결정한 사건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3집>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사례의 본문은 해당 사건의 원 결정문으로부터 되도록 그대로 인용하되, 당사자와 관련인의 이름, 해당 기관 및 구체적 지역의 명칭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 처리하였고, 법령의 명칭, 일자, 띄어쓰기 등의 표기방식 상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문의 표현 중 일부분을 편집하였습니다.

- <붙임>에서 소개한 “성희롱 사건 접수 및 현황”은 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접수·처리된 성희롱 진정 사건의 누계 자료(접수: 970건, 처리: 914건)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합의종결 현황”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당사자 합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4집]

<2010. 7. ~ 2011. 6.>

【차 례】

①	지휘자에 의한 합창단원 성희롱	1
	(09진 차1626, 1627, 1628, 1629 병합, 2010. 7. 29. 결정)	
②	언론매체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9
	(10진 차1370, 2010. 7. 6. 결정)	
③	대학교 교직원의 여학생 성희롱	15
	(10진 정0000600, 2010. 12. 6. 결정)	
④	위탁교육 강사의 교육생 성희롱	21
	(10진 정0087400, 2010. 11. 19. 결정)	
⑤	편의점 점주의 아르바이트 직원 성희롱	28
	(10진 정0117900, 2010. 9. 14. 결정)	
⑥	중학교 교장의 학생 성희롱	33
	(10진 정0174000, 2010. 7. 6. 결정)	
⑦	벽돌생산업체 이사의 여직원 성희롱	42
	(10진 정0214900, 2010. 10. 4. 결정)	
⑧	학원강사의 수강생에 대한 성희롱	49
	(10진 정0223200, 2010. 9. 14. 결정)	
⑨	건강보조식품 판매지점 부장의 경리 성희롱	56
	(10진 정0226600, 2010. 9. 14. 결정)	
⑩	군수 등의 군청 계약직원 성희롱	62
	(10진 정0235200, 0390700 병합, 2010. 8. 20. 결정)	
⑪	지역아동센터장의 직원 성희롱	74
	(10진 정0235400, 2010. 12. 27. 결정)	

12	식품제조업체 상급자의 성희롱	82
	(10진정0304500, 2010. 11. 19. 결정)	
13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등	88
	(10진정0328900, 2010. 12. 6. 결정)	
14	직업전문학교장의 직업훈련생 성희롱	94
	(10진정0329600, 2010. 10. 4. 결정)	
15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직원 성희롱	100
	(10진정0401000, 2010. 9. 14. 결정)	
16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상급자의 성희롱	115
	(10진정0431900, 2010. 9. 14. 결정)	
17	초등학교장의 교사 등 성희롱	119
	(10진정0438800, 2010. 12. 6. 결정)	
18	방송제작사 직원의 프리랜서 성희롱	132
	(10진정0480800, 2010. 10. 4. 결정)	
19	○○청사 청소용역회사 소장의 성희롱	137
	(10진정0535400, 2010. 12. 20. 결정)	
20	물류업체 간부의 성희롱	145
	(10진정0567600, 2010. 12. 6. 결정)	
21	군청계장의 계약직 직원 성희롱	159
	(11진정0008300, 2011. 3. 11. 결정)	
22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계약직 직원 성희롱	167
	(11진정0168600, 2011. 6. 10. 결정)	

붙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및 현황	173
----	------------------------	-----

	합의종결 현황	181
--	---------------	-----

1

지휘자에 의한 합창단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1626 · 09진차1627 · 09진차1628 · 09진차1629 병합
지휘자에 의한 합창단원 성희롱

【진 정 인】 1. 신○○
2. 이○○
3. 정○○
4. 홍○○

【피진정인】 이○○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단원들이고 피진정인은 합창단 지휘자이다. 피진정인은 합창단 연습실이나 공연 대기장소, 축제행사장 주변 등에서 진정인들의 가슴, 옆구리, 팔뚝을 접촉하는 등의 언동을 하여 진정인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 1(신○○)

2009. 2. 10. 11:00 즈음 피진정인은 휴식시간에 앉아 있는 본인의 자리로 오더니 왼팔로 본인의 목덜미를 감싸면서 왼손은 의자 상단부분을 짚었고 오른손으로는 악보대에 놓인 악보를 뒤적였다. 이때 피진정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이 본인의 오른쪽 어깨에 닿았으며, 피진정인이 계속 밀착해오기에 본인이 어깨를 피하자 피진정인이 “여기는 이렇게 부르세요.”라고 하면서 지휘자 자리로 돌아갔다. 피진정인은 평소에도 본인에게 윙크를 하거나 미소를 지었고 지휘자실로 따로 부르거나 퇴근 후 개인적인 전화를 하였다.

2) 진정인 2(이○○)

2008. 8. 피진정인이 지휘자로 부임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본인의 허리, 갈비뼈 부근을 접촉하였고, 이야기할 때 음흉한 눈빛을 보냈다. 연습실 앞, 복도, 계단 등에서 피진정인에게 인사를 하면 피진정인은 친한 척 하면서 습관처럼 본인의 몸에 손을 댔다. 한번은 계단 입구에서 피진정인과 마주쳐 인사를 했는데 피진정인이 신문으로 보이는 둥글게 감은 물건으로 본인의 가슴을 접촉하고 웃으며 지나갔다. 또한 특별한 용건이 없음에도 몇 번씩 지휘자실로 따로 불러 문을 닫은 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예뻐서 그런다. 널 예뻐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간다.”라는 말을 하였다.

2009. 4. 14.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피진정인으로부터 ‘시간이 되면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고 그 후 바로 피진정인이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 시간이 언제 괜찮니?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였다. 이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전화로 하세요.”라고 해도 굳이 만나자

고 했다. 근무 중에 서로 마주치는 것도 불편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여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

2009. 4. 28. 오후 5~6시경 ‘○○○ 축제’ 행사일에 단원 정○○과 함께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얘기를 하면서 왼손 손가락으로 본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쿡 찔렀고 오른손으로 정○○의 왼팔 팔뚝을 주물렀다.

또한 피진정인은 평소 연습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를 들어올리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진정인이 손으로 본인의 몸을 접촉하는 것이 더욱 수치스럽고 불쾌했다.

3) 진정인 3(정○○)

2009. 2. 18. 수술 때문에 입원했다가 다시 출근하여 사무실에 들렀는데 사무실 옆 지휘자실에 있던 피진정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 피진정인이 “수술한 곳은 괜찮으냐? 수술하고 바로 나왔는데 솔로를 시켜서 부담스럽지 않냐? 정 힘들면 얘기하라.”고 하여 괜찮다고 하고 지휘자실을 나오려다가 피진정인의 헤어스타일이 바뀐데 대해 인사치레로 “머리 잘 하셨네요.”라고 했더니, 피진정인이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럼 저를 좀 꼬셔보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놀라서 “네?”하고 되물으니 피진정인은 “아닙니다. 나가보세요”라고 했다.

2009. 4. 7. 1차 연습을 마치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피진정인과 마주쳤는데 피진정인이 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기에 기분이 나빠 언성을 조금 높여 “왜요?”라고 물으니 “아니요, 예뻐서요.”라고 하고 지나갔다.

2009. 4. 28. 오후 4~5시경 진정인은 ‘○○○ 축제’ 행사장에서 단원 이○○과 ○○○관을 구경하던 중 피진정인과 마주쳤는데 피진정인이 이○○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쿡 찔렀고, 본인의 왼쪽 팔뚝 뒤쪽을 2~3회 주물렀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송년음악회 때 수고해 줘서 고맙

다며 밥 한 번 먹자고 하고 지나갔다. 2009. 5. 7. 오전 11~12시경에도 ‘○○○ 박람회’ 행사연주 연습과 관련하여 무대 옆에 대기하는데 등 뒤에서 피진정인이 본인의 어깨 쪽 팔뚝 뒤쪽을 2~3회 주물렀다.

4) 진정인 4(홍○○)

2008. 12. 24.경 ‘○○○○ 찾아가는 음악회’ 연주 중 대기실에서 단원 신○○, 구○○ 등과 얘기를 나누는데 피진정인이 본인의 드레스 중앙에 붙어 있는 큐빅 장식 중 왼쪽 가슴 부위의 큐빅 하나를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잡는 듯이 접촉하면서 “이게 원래 붙어있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보았다. 본인이 깜짝 놀라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시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상한 짓을 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 1(신○○)의 주장에 대하여

신○○가 반주자 옆 자리에 있어 가끔씩 가서 지적하였고 연습시간 보다는 쉬는 시간에 지적하는 것이 합창단 운영에 부드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휘자들이 그렇게 한다. 신○○ 자리가 반주자 옆이라 피아노와 보면대가 앞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신○○를 지적하면서 그런 비슷한 자세를 취한 기억도 있고 음악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신○○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의 성기부분을 신○○의 어깨나 등 부분에 댄 사실은 없으며 본인은 거의 쫓그린 자세였기 때문에 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진정인 2(이○○)의 주장에 대하여

신○○ 등 일부 단원들이 공공연히 본인의 지휘를 거부하려는 분위기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2009. 3. 이후 합창단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

다. 2009. 4. 14. 이○○과 통화한 것은 이○○이 신○○, 정○○ 등 본인에게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과 함께 카풀을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과 대화를 해보고자 전화한 것이다. 같은 해 4. 28. ‘○○○ 축제’ 행사 때 무대 옆 천막으로 설치된 기념관에서 이○○을 만났는데 이○○이 멍청하는 태도를 보여 “별 일 없을 거야. 다음에 식사라도 한 번 하자.”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다.

이○○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정○○의 왼팔 팔뚝을 오른손으로 주무른 기억은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더라도 수고했다는 의미로 어깨를 두드린 정도였을 것이다. 지휘자실에서 다른 단원들과 있다가 이○○을 2번 정도 불렀는데 이는 개인적 의도가 아니라 무용 안무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을 지휘자 방으로 불러서 허리, 갈비뼈 부근을 손으로 접촉하거나 음흉한 눈빛을 보낸 사실은 없고, 진정한 이○○의 주장대로 돌돌만 신문으로 가슴을 접촉했다면 이미 2009. 4.~5.경 문제가 불거졌을 것이다.

또한 예전에 습진이 심해 무의식적으로 사타구니를 만지거나 바지를 추켜올리는 습관이 있지만 공공연히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진정한 3(정○○)의 주장에 대하여

정○○에게 “저를 좀 꼬셔보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화장실 앞에서 정○○을 위아래로 쳐다본 기억이 없으며, 2009. 5. 7. ○○○ 박람회 행사연주 때 정○○을 만난 기억은 있으나 등 뒤에서 왼쪽 팔을 주무른 기억은 없다. 그날 지휘 없이 단원들이 춤을 추는 곡이 끝나고 뒤이어 본인이 연주를 위해 나가려는데 좁은 통로에 구○○와 정○○이 서 있어서 “잠깐만 비켜주세요.”라고 3회 말했으나 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비켜달라는 의미에서 옆으로 민 정도로 팔뚝을 친 것이다.

4) 진정인 4(홍○○)의 주장에 대하여

여성단원들 옷에 큐빅이 달려 있었는데 홍○○ 단원의 옷에 굉장히 큰 큐빅이 달려있어 다른 단원하고 큐빅 사이즈가 맞는지 물으며 손으로 지적한 적은 있으나 여러 단원들 앞에서 그걸 만지거나 가슴을 찌른 적은 전혀 없었다. 그때 당시에 홍○○ 단원은 피진정인에게 웃으면서 “지휘자님, 햇빛 때문에 크게 보일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여 웃고 끝낸 적이 있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진정인들의 동료인 참고인들의 진술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립합창단은 ○○년 창단되었고 2010. 1. 현재 단무장 1명, 단원장 1명, 기획 1명, 반주자 1명, 파트장 4명, 악보담당 1명, 일반단원 38명 등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은 2006. 2. 15.부터, 이○○은 2002. 3. 4.부터, 정○○은 2003. 8. 1.부터, 진정인 홍○○은 2007. 1. 1.부터 각각 합창단에 입단하여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2008. 8. 1. 합창단 지휘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던 중 2009. 9. 24. 해촉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08. 12. 24.경 음악회 연주 중 대기실에서 홍○○의 왼쪽 가슴부위에 붙어 있는 큐빅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게 원래 붙어있는 것입니까?”라고 말하였다.

다. 참고인 ○○○ 등 4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2009. 2. 초 연습실에서 쉬는 시간에 신○○에게 닿을 듯한 정도로 하체를 밀착시켰고, 이로 인해 신○○은 움츠리는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라. 참고인 ○○○ 등 4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2009. 4. 28. ○○○축제 행사장에서 손으로 정○○의 어깨 부근 팔뚝을 만졌고, 2009. 5. 7. ○○○박람회 행사 시에는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의 팔 위쪽 맨살을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진정인은 연습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바지를 자주 치켜 올리거나 사타구니를 만졌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된다.

우선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보면, 진정인들은 합창단의 단원이고 피진정인은 그 합창단의 지휘자이며 본 진정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진정인의 언동이 합창단이 사용하는 공간 및 외부 공연이 있는 행사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홍○○이 입은 드레스 가슴 부분에 붙어 있는 큐빅이 닿았을지도 모르는 정도로 가까이에서 손으로 지적하

였고, 신○○를 지도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하체를 밀착하였으며, 공연을 위해 노출 정도가 심한 복장을 착용한 정○○의 왼쪽 팔 윗부분을 만졌다. 피진정인의 행동 중 신체접촉을 한 부분은 모두 민감한 부분이며, 이 같은 행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적 함의가 있는 행동이고,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인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과거 습진 경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바지를 자주 치켜 올리고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하나 상급자의 지위에서 다수의 단원이 보는 앞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건대 각각의 인정사실들이 단순히 일회적,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사실 외에도 평소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진정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성희롱으로 인정되며, 피진정인이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위원장 문경란 위원 김양원 위원 장주영

2

언론매체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차0001370 언론매체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전○○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9. 1. ~ 2009. 12. ○○경제 ○○○○부 △△팀에서 피진정인과 근무하였는데,

가. 피진정인은 2009. 3. 초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자리로 와 다른 직원이 보지 않을 때 갑자기 진정인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갖다 대거나 비볐고, 결재를 할 때 진정인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허벅지를 만지는 성희롱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진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의를사를 표현했으나 이후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는 더 심해졌고 “계집애가 어디서 소리를

뻑뻑 지르나, 소금이나 뿌려야 겠다”는 비하적인 말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9. 4. 초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뒤에서 껴안았고, 그 무렵 ○○테크노파크로 함께 출장 가는 차안에서 “내 친구가 29살이랑 사귀는데 한 달에 200만원 주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을 하였고, 이후에도 진정인에게 “회사가 멀지 않냐, 오피스텔을 얻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09. 9.경 아침에 얼굴이 좀 부은 진정인을 보고 “임신한 거 아니냐?”, 다른 동료직원들 앞에서 “김○○은 남자 킬러다, 전직이 술집 여자였는지 모른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성희롱으로 인해 진정인은 직장을 그만두었는바, 피진정인에 대해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자리는 출구 쪽이고 직원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구조여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을 대는 등의 성희롱을 할 수 없다. 또한 결재를 할 때 진정인의 다리를 만진 적 없고, 오히려 진정인이 굳이 본인의 옆 자리에 의자를 바짝 붙이고 앉아서 본인의 의자를 치워버릴 정도였다.

2) 본인은 진정인에게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진정인을 뒤에서 껴안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 또한 ○○으로 출장 가는 차안에서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사귀다는 이야기는 했으나 친구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지테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본 내용을 얘기한 것이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거기서 본 내용은 23살의 아가씨가 44살의 남자와 스폰서 형식으로 만난다는 것이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사실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젊은 친구에게 물어본 것이다. 당시 진정인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3) 진정인이 회의 시간에 거래처 남자직원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여 “너 남자 킬러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아침에 얼굴이 부어 “임신한 거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성적인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니고, 당시 진정인도 웃으면서 넘어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4) 진정인은 성희롱으로 인해 스스로 그만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상사에게 무례하게 굴어 본인이 그만두도록 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경제신문이 광고기획기사를 위탁한 ○○경제 ○○○부 △△팀 팀장으로, 2009. 1. 5. 면접 후 진정인을 채용하였다. 진정인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광고영업 및 광고기획기사 작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말 업무를 그만두었고, 피진정인도 2010. 5. 이 회사를 퇴사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과 함께 일했던 참고인들이 피진정인이 결재를 하면서 진정인의 다리를 만지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고, 피진정인이 진정인 뿐만 아니라 참고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여성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이 결재를 하면서 진정인의 다리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진정인은 ○○으로 출장가는 차안에서 진정인에게 23살의 아가씨가 44살의 남자와 스폰서 형식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참고인들이 피진정인으로 부터 피진정인과 만나주면 물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고, 피진정인이 자기와 데이트를 하면 급여를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2009. 9.경 회의 자리에서 미혼의 진정인에게 “임신한 거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있고, 다른 직원에게 “김○○은 남자 킬러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채용한 관리자이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소 근무하는 사무실과 업무상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진정인의 언동이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진정인의 상사인 피진정인이 결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정인의 다리를 만진 것은 성적 함의를 지닌 행동에 해당한다.

또한 회의석상에서 미혼인 진정인에게 “임신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다른 직원에게 “김○○(진정인)은 남자 킬러다”라고 말한 것은 일반 사회 통념상 미혼인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을 성적으로 단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점, ‘남자킬러’라는 것이 여성이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적 언동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 상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회사 여자직원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겠다고 제안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성적 함의를 지닌 발언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아울러 성희롱은 대부분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직장 등 근로관계에서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출석 진술시에도 진정인에 대해 수차례 “계집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상사로서 갖추어야 할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채용한 관리자로서 직장 내에서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인다.

4)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진정인의 성희롱적 언동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성희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성희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3

대학교 교직원의 여학생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00600 대학교 교직원의 여학생 성희롱

【진 정 인】 신○○

【피진정인】 신○○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과 3년 재학생으로, 2010. 1. 29. ○○노동 조합 ○○분회 조합원들이 ○○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처장실에 갔을 때 진정인도 동행하였다. 진정인은 ○○처장실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과 주임인 피진정인이 나오더니 진정인을 끌어내는 과정에 진정인의 뒤에서 목을 잡아 채면서 끌다가 손을 아래로 내려 진정인의 가슴을 한두 차례 주물렀고 허리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은 이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노동조합 ○○분회는 2010. 1. 27. ○○대학교 학생문화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후 학교측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요구하였는데, ○○대학교 미화원은 ○○ 및 ○○ 소속 용역직원이므로 용역회사와 협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분회 소속 미화원과 학생, ○○노동조합 총연맹 관계자 등 20여명은 같은 달 29. ○○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처장실에 들어왔다. 본인은 이들을 내보내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몸싸움이 일어났다.

2) 학생들은 처장 가까이 가려고 하고, 본인은 이를 막는 상황에서 세 명의 여학생과 마주보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여학교라 이런 몸싸움을 하더라도 양손을 사용하여 밀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을 깎지 끼고 팔꿈치로 학생들을 밀었다. 이때 팔이 닿았어도 가슴 위 쪽이었을 것이다. 또한 세 명이 동시에 본인을 밀쳐서 본인도 반사적으로 팔짱을 끼고 팔 전체를 이용해서 세 명을 밀었다. 그러자 학생들이 밀려서 몸이 약간 휘청였는데 진정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성폭행이다, 고발하겠다”라고 하여 본인은 그런 적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했다. 당시 진정인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진정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두 세 번 “성폭행이다”라고 말하였다.

3) 본인은 ○○처장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와 ○○처장실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학생을 잡을 필요가 없었고, 학생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손을 잡아서 끌어내지 목을 걸어서 할 이유가 없다.

4) 위 사건 발생 후 본관 1층 복도를 지나다가 진정인을 만났는데, 진정인이 사과를 요구하여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실수로 그랬다”라고 사과하였다. 이는 진정인이 성폭행을 했냐고 물어봐서 성폭행은 안했지만 진정인의 느낌이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한 것이지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을 인정해서 사과한 것은 아니다.

5) 2년 전 학생들 20여명이 ○○처장을 쫓아가는 상황에서 처장을 몸으로 막으면서 무릎을 올리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쫓아오다 본인 무릎에 부딪쳐 휘청거렸고, 이후 그 학생이 본인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은 있다. 이후 그 학생은 본인을 보면 피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 ○○학부 ○○전공 3학년 학생으로 부학생회장이고, 피진정인은 ○○대학교 ○○처 ○○과 주임으로, 근무 기간은 22년이다.

2) ○○노동조합 ○○분회는 2010. 1. 27. 출범식을 가진 후 같은 달 29. ○○대학교측에 노동조합사무실 등을 요구하면서 ○○분회 소속 미화원, 진정인을 포함한 ○○대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동아리 ‘○○’ 소속), ○○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등 20여명이 ○○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처장실로 들어갔다.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 일행이 ○○처장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양측 모두 처장실에 들어간 후 고성 이 오가는 와중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대해 성희롱이라는 취지의 발언 (“지금 뭐하는 거냐, 이거 성희롱인거 모르냐, 사과하라”)을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이 위 성희롱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진정인에게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실수로 그랬다”며 사과한 사실이 있다.

3) 당일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세 명의 여학생과 마주보면서 몸싸움하는 과정에 가슴 위쪽에 팔이 닿았을 수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바로 뒤에 서있었던 ○○처장의 진술과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처장실 가운테에 커다란 테이블이 있어서 마주보며 대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건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원편 뒤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이 당시 그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음을 큰 소리로 알리면서 피진정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처장실 진입 당시 피진정인이 다른 여학생의 귀에 대고 반말로 속삭인 후 이에 대해 사과한 점,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진정인에 대해 성희롱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어떤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언동의 사실관계, 해당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피진정인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위 사건은 대학교 ○○처 직원인 피진정인이 ○○처장실에 진입한 학생 및 노동조합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진정인을 비롯한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는지 살펴보면, 진정인측은 미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처장실 진입 및 면담을 시도하고, 피진정인측은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가운데 남성직원이 여학생의 가슴과 허리를 만진 행위는 보통의 여성들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성희롱은 대부분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성적 편견, 차별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비록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진정인이 성희롱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피진정인이 반말로 사과한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대치 과정에 다른 여 학생의 귀에 대고 반말로 속삭인 바 있고, 참고인들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다고 주장 하는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이 필요하고, 피진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교는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6.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4

위탁교육 강사의 교육생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87400 위탁교육 강사의 교육생 성희롱

【진 정 인】 김○○

【피 해 자】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음

【피진정인】 하○○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2010. 1. 19. 13:30~16:00 ○○벨리(○○도 ○○시 소재) 강의실에서 ○○○○공사 신입직원 기본역량 외부위탁 합숙교육 중 피진정인이 ‘신입직원의 올바른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특정 여성 직원들을 지목하며 “못 생겼다. 한번에 남자 네댓은 만나게 생겼다. 못생긴 여자는 설거지나 하고 밥이랑 빨래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예쁜 여자는 립싸롱(술집)에서라도 잘 나가니까 성격이 안 좋아도 문제가 없는데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가 문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0. 1. 19. 13:30~16:00 ‘신입사원의 올바른 자세’를 주제로 강의 하면서 “한 번에 남자 네댓은 만나게 생겼다”는 등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전에 본인의 회사가 ○○○○라는 회사로부터 교육을 의뢰받은 업무 중 협력사 대표들이 관상을 통한 인재개발과 육성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여 당시 강의한 ○○대학교 조○○ 교수에게 배운 내용 중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덮으면 운이 잘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두발을 단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자의 눈이 크면 매력적으로 보여 남자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몰려들어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데 쓰기 힘들어진다. 진지하게 사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등을 참고한 것이다.

2) 본인 강의내용 중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어정쩡하게 예쁜 여자의 세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불행해지는 여자가 어정쩡하게 예쁜 여자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맨 앞줄 2명의 여자 교육생 중 1명을 가리키며)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자신도 못난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쓸데없이 마실 다니지 않고 조신하게 집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며 자랍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차면 머슴 같은 남자라도 만나서 성실하게 잘 살아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주 예쁜 여자입니다. (맨 앞줄 2명의 여자 교육생 중 다른 한 명을 가리키며) 이런 사람은 미모가 좋아서 대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술집에 나가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정쩡하게 예쁜

여자라고 합니다. (맨 앞줄 2명의 여자 교육생 중 최초 지목했던 사람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그래도 동네에서 예쁘다고 칭찬을 자주 받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고 외모 가꾸기에만 정신이 팔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다가 나쁜 남자들하고 어울리게 되어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역량을 가진 자, 미숙한 역량을 가진 자, 어정쩡하게 역량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정쩡한 역량을 갖고 자만심에 빠져서 방심하며 생활하거나 건방지게 행동해서는 안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성희롱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2010. 1. 20. 교육 2일차 진행 교관으로부터 “교육생 중 1명이 성희롱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학생장에게 본인이 성희롱 의도를 가지고 한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학생장은 피진정인이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2010. 2. 8. 오전 교육생들에게 “성희롱이라는 지적에 당황스럽다. 한 가지 실수라고 판단되는 것은 ‘예쁜 여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앞뒤의 연결로 볼 때 ‘예쁜은 탁월한 역량’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느냐 … 중략 …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기분 나쁘게 들었다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 나이 먹은 본인의 불찰이다. 특히 그렇게 자신을 지적한 것처럼 들었던 여교육생들에게도 사과드린다.”라는 설명을 하였다.

다. 피해자

1) 유○○

피진정인이 못생긴 여자에 대해 말할 때 맨 앞줄에 앉은 본인을 가리키며 “못생긴 여자는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하면 된다. 예쁜 여자는 술집 마담을 해도 잘 나간다.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가 문제다. 본인은 예쁜 여자들을 꼬드겨서 데이트 했다.”고 하는 등 성적인 말을 많이 해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여 직원들이 황당해 했다.

2) 홍○○

유○○과 본인은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관상을 잘 안다면서 유○○과 본인을 번갈아 가리키며 “남자가 잘 따르게 생겼다. 여자는 얼굴 생김새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술집 마담이 될 수 있다. 애를 많이 낳겠다.”는 등 성적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교육생들도 술렁거렸다.

3) 한○○

피진정인이 관상을 잘 본다고 말한 후 교육생들을 가리키며 “너는 예쁘니까 남자 네댓은 만나겠다. 술집에서 마담을 해도 잘 나가겠다. 너는 돈을 펄펄 쓰기 때문에 남자가 고생하겠다.”는 등 성적 발언을 하여 황당했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사는 주식회사 ○○○○훈련원과 교육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4. 및 같은 달 1. 18.부터 1. 22.까지 ○○도 ○○시 소재 ‘○○벨리’에서 신입사원 47명을 대상으로 신입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식회사 ○○○○훈련원은 ○○년 법인으로 설립되어 기업교육 컨설팅, 산업체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동 훈련원의 대표이다.

2) 2010. 1. 19. 13:30~16:00 피진정인이 ‘신입사원의 올바른 자세’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특정 여성교육생들을 지목하며 “못 생겼다. 한번에 남자 네댓은 만나게 생겼다. 못생긴 여자는 설거지나 하고 밥이랑 빨래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예쁜 여자는 룸싸롱(술집)에서라도 잘 나가니까 성격이 안 좋아도 문제가 없는데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가 문제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피해자들의 연수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3) 2010. 2. 8. 피진정인은 교육생들에게 못생긴 여자, 예쁜 여자, 어정쩡한 여자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하였으나 성희롱 의도는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강의하면서 피해자 유○○, 홍○○을 가리키며 성적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며 그러한 발언 때문에 교육생들이 황당해 하고 교육 중에 술렁거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된다.

○○○○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정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피진정인은 ○○○○공사와 교육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공직자윤리행위가 강의 도중 이루어져 이 사건 성희롱에 있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성희롱은 대부분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성적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되는데 피진정인의 발언 중 ‘룸싸롱에서 잘 나간다’는 내용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써 피진정인은 ‘탁월한 역량’을 비유한 발언이고,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정 교육생을 지목하면서 발언을 하고 강의 중에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적잖게 당황스러움을 느꼈으며,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9.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피해자 명단

1. 유○○
2. 정○○
3. 한○○
4. 김○○
5. 권○○
6. 김○○
7. 김○○
8. 박○○
9. 정○○
10. 서○○
11. 홍○○
12. 부○○
13. 류○○
14. 장○○
15. 한○○

5

편의점 점주의 아르바이트 직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 【사 건】 10진정0117900 편의점 점주의 아르바이트 직원
성희롱
- 【진 정 인】 이○○
- 【피진정인】 이○○
-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백오십만 원을
지급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
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0. 1. 25.부터 ‘□□ ○○구청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했고, 피진정인은 편의점의 점주인데,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10. 3. 1. 22:3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손님 간에 시비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편의점에 나와, 같은 날 23시경에 근무를 마친 진정인과 편의점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자정 무렵 두 사람은 술자리를 끝내고 잠시 도로변에 서있었는데, 피진정인이 갑자기 진정인을 껴안고 얼굴, 가슴, 다리에 힘을 가하며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은 완강히 거부하고 황급히 주차장에 세워 둔 자가 차량에 탔으나, 피진정인이 따라와 진정인의 위에 앉은 채 다시 얼굴을 감싸고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려 하였다. 다음날 피진정인은 편의점에 나와 진정인에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쳤었나 보다. 차라리 때리지 그랬냐?”라고 했지만, 진정인은 이를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여 후임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다.

2) 같은 달 17. 이른 아침 진정인은 근무 외 시간에 편의점에 들렀다가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개인 용무상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는데, 피진정인이 직접 나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했으나, 피진정인은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정인에게 “모텔이란 말을 떠올리니 마음이 심하게 뛰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진정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껴 곧바로 편의점 근무를 그만두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과는 점주와 직원의 관계이긴 하지만 비슷한 또래여서 친구처럼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였다. 2010. 3. 1. 밤에 진정인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고, 술자리를 마친 후 진정인과 길가에 서 있다가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진정인을 포옹했으나 진정인은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다. 진정인이 자가 차량을 세워 둔 주차장으

로 가자 뒤따라가서 “들어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많이 취했다.”라고 하면서 귀가하였다. 다음날 진정인을 찾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진정인과 다시 편하게 지냈다.

2) 같은 달 17. 07:00경 진정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진정인이 여전히 피진정인에게 호감이 있어 연락한 것으로 생각했고, 두 사람 모두 아침식사를 하지 않아 같이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진정인은 “나 지금 집에 가면 잠 못 자는데...”라는 말을 하여 “그럼 드라이브나 하자.”면서 본인의 차로 돌아다니던 중 길가에 모텔이 보였다. 진정인에게 “같이 모텔 갈까?”라고 묻자 진정인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정색을 했고, 그 이후 진정인은 편의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0. 1. 25.부터 같은 해 3. 17.까지 ○○도 ○○시 소재 24시간 편의점인 ‘□□ ○○구청점’을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했고 근무시간대는 16시부터 23시까지였다. 피진정인은 위 편의점의 점주이다.

2) 2010. 3. 1.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길가 및 자가 차량 안에서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도 술자리 후 진정인을 포옹했고 진정인을 주차장까지 따라가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했던 일이 있으며, 다음날 피진정인 스스로 진정인에게 사과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한다.

3) 2010. 3. 17.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모텔을 떠올리니 마음이 뛰여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도 진정인에게 “같이 모텔 갈래?”라고 물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난 동기에 대해 진정인은 근무시간 조정을 위해 피진정인에게 연락했다고 하나, 피진정인은 업무적 용건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만남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진술이 엇갈린다.

4) 진정인은 위 3)항 기재 일자부터 편의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본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본 사건에 대해 알린 일이 있으며, 2010. 3. 21.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 및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본 진정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편의점의 점주와 직원의 관계에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2010. 3. 1. 피진정인이 고객의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에 나왔다가 그 직후 진정인과의 술자리로 이어진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만 같은 달 17. 두 사람이 만난 일

에 대해 진정인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자 피진정인에게 연락했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하나 피진정인은 사적인 만남으로 생각했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이 2010. 3. 1. 술자리를 가진 후 심야에 진정인을 끌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고, 귀가하려는 진정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성적 언동으로서 이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의를 밝힌 진정인이 적지 않은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과하였다고 하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는 성적 언동이 있었는데, 비록 그 언동 자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그로 인해 이미 발생했던 성적 굴욕감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진정내용 중 2010. 3. 1. 있었던 피진정인의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한 진정인의 정신적 피해 및 일을 그만둠으로써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참작하여 진정인의 2개월분 예상 급여 등으로 환산된 금 백오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하고, 앞으로 유사한 언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6

중학교 교장의 학생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 【사 건】 10진정0174000 중학교 교장의 학생 성희롱
- 【진 정 인】 고○○
- 【피 해 자】 1. 김○○
2. 임○○
3. 이○○
4. 김○○
- 【피진정인】 윤○○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교육청에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들은 ○○도 ○○중학교(이하 ‘○○중’이라 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중 교장인 피진정인은 2009. 4. 25. 수학여행 중 버스 안에서 피해자 1에게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줄 테니 ○○랜드에 남아서 데이트하자.’라고 말하고, 2009. 6.경 가출했던 피해자 2에게 ‘너 가슴

크다, 모텔 갔지? 남자랑 잤지? 어땠어?’라고 말하였으며, 2009. 8.경 피진정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 3의 팔뚝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2009. 11.경 교장실을 청소하던 피해자 4에게 ‘얼마나 컸나 안아보자.’라는 등의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8년에 ○○중에 부임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상담교사를 맡았는데, 피진정인의 언동 때문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2010. 4.경 피해자 1이 상담실에 찾아와서 피진정인으로부터 불쾌한 일을 겪었다면서 진정인과 상담하였다.

2) 2009. 여름경 진정인은 피해자 2가 교무실에 와서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 2가 피진정인이나 교사들에게 자주 혼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지켜봤다. 2010. 4.경 피해자 2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진술하겠다고 하여 진정인과 만났는데, 2009. 여름에 교무실에서 운 것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성적 굴욕감을 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피해자 3과 4는 2009. 말경 진정인과 상담하면서 피진정인의 행동 때문에 불쾌하다고 이야기했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1

2009. 4. 25. 수학여행으로 ○○랜드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더 놀지

못해 아쉽다고 피진정인에게 이야기했다. 당시 본인은 버스 두 번째 통로 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맞은 편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진정인이 몸을 돌려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 줄게, 남아서 ○○랜드에서 데이트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본인이 피진정인에게 ‘진짜이시냐?’라고 묻자 피진정인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허락받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피진정인이 어른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올해 친구들과 수학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결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학교에 소문이 나서 진정인과 상담했으며 이 문제로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다. 아버지가 학교에 다녀가신 후 교감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 보시기에 교감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했다.

2) 피해자 2

평소 학교 폭력, 금품 갈취 등으로 피진정인에게 자주 불려갔고, 2009. 6.경 가출을 하고 돌아와서 피진정인에게 불려가 면담을 했다. 당시 빛나는 나비 장식이 가슴에 달린 면 티셔츠를 여름 교복 속에 입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그 장식을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가슴 크다.’라고 말해서 부끄럽고 기분이 나빠 한 발 뒤로 물러서 몸을 피했다. 피진정인이 ‘안 나왔던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 뭘 했는지 다 적어라, 어디에 가서 잤는가? 밤에 남자하고 있었지? 남자랑 잤지? 모텔 잤지?’라고 물었다. 본인이 먼저 모텔에 갔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피진정인이 그렇게 다그치고 화내면서 묻기에 놀라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피진정인이 ‘뭘 했기에 안 적느냐? 남자랑 잤지? 어땠어?’라고 물었다. 교장실에서 나와 창피하고 서러워서 교무실에 가서 울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러 갔다.

3) 피해자 3

2009. 8.경 학교 중앙현관에 서 있다가 피진정인과 마주쳐서 피진정

인에게 인사했다. 피진정인이 인사를 받으면서 내 엉덩이를 툭툭 치고 여름 교복의 반팔 상의 아래로 드러난 팔뚝을 쓰다듬어 기분이 나빴다. 내가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같이 있던 친구가 보았다. 피진정인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지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 피해자 4

2009. 11.경 친구와 교장실을 청소했는데, 피진정인은 책상 앞에 서있었고 본인은 친구와 함께 등 돌리고 서서 교장실 문 옆 책장 먼지를 털고 있었다. 등 뒤에서 피진정인이 ‘얼마나 컸나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몸을 돌려 피진정인에게 ‘싫어요, 왜 이러세요?’라고 했다. 피진정인이 느끼하고 징그럽게 여겨져서 싫었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 1에 관한 주장

2009. 4. 25. 수학여행으로 갔던 ○○랜드에서 나오는 길에 ○○랜드 시계탑 앞에서 ‘○○랜드에서 더 놀고 싶다.’라고 조르는 학생들에게 ‘오늘 하루 더 여기에서 자고 내일 가겠다.’라고 농담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맨 앞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역사와 관련된 설명을 한 후 자리에 앉아 자면서 왔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 1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 2010. 4.경 피해자 1의 아버지가 본인을 찾아왔지만 피해자 1의 아버지는 본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 피해자 2에 관한 주장

2009. 여름에 가출했다 돌아온 피해자 2를 교장실로 불렀다. 당시 피해자 2는 가슴에 빛나는 장식이 있는 먼 티셔츠를 교복 속에 입고 있었는데 옷이 몸에 달라붙어 복장을 지도할 생각으로 ‘너 가슴 크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2에게 ‘밤에 한 것을 하나하나 다 써라, 밤에 남자하고 있었지? 남자랑 잤지?’라고 물었다. 피해자 2가 모텔에

갔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성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잠을 어떻게 잤냐고 물은 것이다. 그 날 피해자 2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온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3) 피해자 3에 관한 주장

피해자 3에게 인사를 받은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 3의 몸이나 옷에 손을 댄 기억은 없다.

4) 피해자 4에 관한 주장

교장실을 청소하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좋은 학생 등 일부 학생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피해자 4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그와 같은 말을 교장실에서 청소 중인 학생에게 한 적이 없다.

5) 그 외 이 사건 진정에 관련된 주장

2010.초 진정인이 직책을 맡고 싶어 했는데 본인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이 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진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 내용의 상당수는 본인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이지만, 교육자로서 학교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병가 등을 사용하여 정년퇴직하는 2010. 8. 말까지 학교를 떠나 있을 생각이다.

라. 참고인

1) 정○○(○○중 교감)

2010. 4.경 피해자 1과 면담하면서 피해자 1이 작년 수학여행 때 피진정인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 1을 위로하였다.

2) 김○○(피해자 1의 아버지)

2010. 4.경 피진정인을 찾아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피진정

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3) 임○○(피해자 2의 아버지)

임○○는 2009. 여름 피해자 2로부터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듣고 당일 오후 늦게 피진정인을 찾아가 고소하겠다고 항의하였더니 피진정인은 본인에게 화를 풀라고 말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해자들은 ○○중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진정인은 ○○중 교장이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1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2009. 4. 25. ○○중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랜드를 다녀오면서 숙소로 돌아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 1에게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진정인이 피해자 1을 향해 몸을 돌려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 줄게, 남아서 ○○랜드에서 데이트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1이 이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면서도 부모님, 진정인, ○○중 교감 정○○ 등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1의 아버지가 2010. 4. 경 피진정인을 찾아와 항의하였고 피진정인이 이에 관하여 사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피해자 1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언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해자 2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2009. 6. 피진정인은 피해자 2와 면담 시, ‘너 가슴 크다, 밤에 남자하

고 있었지? 남자랑 잤지?’라고 물었다. 피해자 2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피진정인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해자 3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2009. 8.경 ○○중 중앙현관에 서있던 피해자 3이 피진정인을 보고 인사를 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 3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팔뚝을 쓰다듬었다. 피해자 3이 피진정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고 불쾌함을 상기하면서도 당시 입고 있던 교복이 여름 교복이어서 팔뚝의 맨살이 드러났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된다.

4) 피해자 4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2009. 11. 피진정인은 교장실을 청소하던 피해자 4에게 ‘얼마나 컸나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4가 당시 피진정인이 서있던 위치가 책상 앞이었던 것과 자신과 친구가 함께 청소하고 있던 위치가 교장실 문 옆 책장이었으며 당시 먼지를 털고 있었던 점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된다.

5) 한편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성과 관련한 노골적인 언사와 혐오스러운 표현을 한 기억은 없으나, 교육자로서 부족한 점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진정인은 2010. 8. 말경 정년퇴직할 예정으로, 2010. 5.경 병가를 사용하다가 2010. 6. 중순경 병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하였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 등의 사실관계, 해당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

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1, 2, 3, 4의 피해사실 모두 피진정인이 ○○중 교장으로서 수학여행 참여, 학생 훈계, 학교 및 교장실 내 학생 지도 중 발생한 행위이므로, 교육자로서의 피진정인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등을 주었는지 살피건대, 2009. 4. 25. 수학여행 중 피해자 1에게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 줄게, 남아서 ○○랜드에서 데이트하자.’라고 말한 것은 성인 남성이 사춘기 여학생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만남을 갖기를 암시하는 성과 관련한 비윤리적인 내용이다. 이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장선생님으로서 지도를 받는 여학생에게 하여서는 안 되는 성적 함의를 지닌 성적 언동으로, 진심이 아닌 농담으로 건넨 말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의도는 성적 함의를 인정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피해자 1은 위 발언을 듣고 ‘피진정인이 어른이고 또 남자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2009. 6.경 피진정인이 피해자 2와 면담하면서, ‘너 가슴 크다, 밤에 남자하고 있었지? 남자랑 잤지?’라는 요지의 말을 한 것에 관하여 살펴본다. 교장인 피진정인이 지도하는 여학생의 가슴에 관하여 언급하고 대답을 거부하는 여학생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캐물은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행실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엄하게 훈계하여 지도할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이는 훈계와 지도의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2009. 8.경 피진정인이 ○○중 중앙현관에서 피진정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 3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 2009. 11.경 교장실을 청소하던 피해자 4에게 한 ‘얼마나 컸나 한 번 안아보자.’라는 한 발언 등은 신체 접촉에 관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피해자 3과 4는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 피진정인이 느끼하고 징그럽게 여겨져서 싫었다.’라고 표현하여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진정인이 향후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피진정인에게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결론

이에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14900 벽돌생산업체 이사의 여직원 성희롱
【진 정 인】 장○○
【피진정인】 박○○

【주 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일천만원, 주식회사 ○○산업 대표 정○○는 오백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의 직장상사인 피진정인은 2006년 경 진정인을 뒤에서 껴안고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적 굴욕감을 주어 진정인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두 번 다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9. 6. 경 또 다시 진정인 앞에서 본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언동을 반복하여 진정인이 심한 성적 굴욕감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는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없었다면 직장을 그만 둘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2. 7. 경 벽돌 생산 업체인 ○○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6년 경 ○○산업 대표 정○○가 동종업체들의 ○○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떨어지자 전무이사인 피진정인은 선거에서 떨어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걱정 하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진정인을) 한 번 안으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다”며 진정인을 뒤에서 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또한 날짜미상 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불러서 가보니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라고 하였고, 피진정인의 가족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돌아 간 날짜미상의 날에 피진정인이 사무실에서 본인의 성기를 만지며 진정인에게 자기 것을 만져달라고 하여 제품 야적장으로 도망 가 30여분 동안 피해 있었던 적도 있었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언동들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진정인이 미안하다며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산업 대표인 정○○도 진정인을 붙잡아 두 번 다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 받고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었다.

2009년 정○○가 ○○ 이사장 선거에 당선되어 사무실을 자주 비우게 되자 진정인과 피진정인만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같은 해 6. 경 피진정인이 소파에 앉아 진정인을 쳐다보며 본인의 성기를 만지작거렸다. 진정인은 너무 놀랐으나 이를 못 본 척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일주일 정도 지속하다 진정인이 계속 쳐다보지 않자 날짜미상의 날 아침 진정인의 책상 앞에 서서 성기를 흔들고, 다시 진정인의 옆으로 다가와 성기를 잡고 마구 흔들며 진정인은 사무실을 뛰쳐나와 제품 야적장 사이에 숨어 있었다. 더 이상 피진정인과 함께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아 다음날 정○○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을 참을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그 후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으며 후임자를 바로 구하지 못해 한 달 반 정도 더 근무하였다. 회사를 그만두고 피진정인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잊혀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자꾸 그 일이 생각나면서 화가 나거나 두렵고,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진정인의 행위로 본인만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생겨 진정하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정인을 안거나 야한 동영상을 보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엄○○, 장○○, 소○○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주식회사 ○○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1992년 경 지인 정○○와 자본을 공동 출자하여 벽돌 공장인 주식회사 ○○산업을 설립하였으며 정○○는 대표이사로, 피진정인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고 진정인은 2002. 7. 경 지인의 소개로 ○○산업에 입사하여 2009. 6. 경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후임자 물색 및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인하여 같은 해 7. 31. 자로 퇴사하였다. ○○산업의 직원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총 여덟명이고 진정인만 여성인데 남자 직원들은 보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사무실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대표이사인 정○○가 근무하였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진정인은 2006. 5. 경 피진정인에게 “제가 진짜 모멸감도 느껴지고 더 이상은 일 못하겠어요.”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내가 진짜 사과한다, 내가 한번만 더 그런다면 내가 니한테 말 안할게, 그 동안의 것은 조금 이해를 해줘,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진정인이 다시 “아니,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사님이 지금 더 심해지셨잖아요”라고 하자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런다면 나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니가 이해해줘, 나 진짜 부탁할게, 한번만!”이라고 하였다.

다. 같은 녹취록에 따르면 진정인은 2006. 경 ○○산업 대표이사 정○○에게 “이제 사장님께 그 동안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이사님 때문에 저 회사 못 다니겠어요. 솔직히요. 사장님이 저기... 처음에 선거 끝나고 그때는 너무, 사장님보다 더 힘드셨거든요. 그 결과 보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사님이 저를 한 번 안아보자고, 그러면 자기가 마음이 조금 괜찮겠다고 그래서 안한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안으면서.. 보통은, 보통 사람이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 그런 마음을 떠나서 이해심으로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지나쳤어요. 이사님이. (중략)... 그 선이 조금 좀 지나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하고 계시는데 ”잠깐 컴퓨터 좀 봐주라“고 해서 갔더니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남녀가 성행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 (중략) ... 진짜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겠어요? 직장상사 얘기를! 그것도 사장님이나 똑 같은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토요일날 와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 앞에서 자기 것을 만지면서 자기 것을 만져 달래요. 세상에! 아유 나 참~~“ 이라고 하였다. 진정인의 얘기에 대하여 정○○는 ”그 얘기는 장대리하고 나하고만 이야기야, .. (중략)... 옹호하는 거 아닌데 남자니까 그러고, 이성이니깐 그럴 수 있는 거야...(중략)...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랬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하였다.

라. 진정인의 친구인 참고인 엄○○은 2009년 경 진정인이 다리를 다

쳐 문병을 갔는데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진정인 앞에서 성기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언동을 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언니인 장○○는 2006년 경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안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하여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한 적이 있으며, 2009년 피진정인의 행위가 다시 반복되어 진정인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당시 참고인은 진정인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참고 다니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호소하여 매우 마음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조카인 소○○은 2006년 경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을 전해 들었는데 나중에 문제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진정인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녹음해 두라고 충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주식회사 ○○산업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대표이사 정○○는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한 얘기를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 받은 바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 및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행위 발생 당시 피진정인은 ○○산업의 전무이사이고 진정인은 직원으로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고, 피진정인의 언동은 업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희롱에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 언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2009. 6. 경 피진정인이 진정인 앞에서 본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2006년 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껴안거나 야한 동영상을 진정인에게 보여주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한 것 또한 사실로 인정되며, 비록 당시의 사건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었다고는 하나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의 상습성 및 회사의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퇴직 등 2009년에 있었던 진정인의 피해를 인정하는 근거로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진정인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었고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피진정인을 상대로 허위 진정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 진정인이 사직한 이유 또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형식적인 ○○산업의 전무이사이자 실질적인 사용자로 진정인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진정인을 안거나 만지고 진정인 앞에서 본인의 성기를 흔드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하였는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특히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직장을 그만 둔 후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을 잊고자 노력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피진정인의 행위를 생각하면 화가 나서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등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업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산업 대표 정○○는 2006년 경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사용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 재발로 진정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므로 진정인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일정부분 인정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법 제39조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백만원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4.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8

학원강사의 수강생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23200 학원강사의 수강생에 대한 성희롱

【진 정 인】 1. 정○○

2. 최○○

【피진정인】 박○○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학원장에게 강사의 수강생에 대한 성희롱 재
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들은 2010. 3. 10. ~ 2010. 4. 20. ○○시에 있는 ○○학원에
서 피진정인이 강의하는 직업상담사 과정을 수강하였는데, 피진정인은
강의 중 수시로 음담패설 및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하였다. 2010. 3. 18.경
강의시간에 피진정인은 “간호원은 간호사라고 불려줘야 좋아한다. 여자
간호사는 많은데 왜 남자 간호사는 없는지 모르겠다”며 바지를 내리는
제스처를 하면서 “남자간호사가 주사 놓을 때 자~ 올라가세요, 바지내

리세요, 팬티 내리세요 하고 얼마나 좋아”라고 말하여 한 여성수강생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시끄럽다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강의중 칠판에 동서남북을 그리면서 ‘west’의 ‘w’를 여자 가슴 모양으로 둥그렇게 그리며 ‘바스트’라고 읽거나, ‘70대 할아버지가 능력이 좋아서 60세 할머니와 63세 중풍 할머니 두 사람의 애인이 있었지만 63세 중풍 할머니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중풍 걸린 할머니가 손을 떨기 때문에 남자 물건을 잘 흔들어서’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4. 8. 강의 도중 한 여성 수강생을 지목하면서 “아가 씨야 응~ 무주물 맞제? 결혼 안했으니 주인이 없다 아이가? 그럼 무주물 아이가? 꼽으면 임자 아이가?”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울릉도’ 노래를 부르면서 손으로 여자 가슴을 떠받쳐 위아래로 흔드는 듯한 동작을 하는 등 성적 언동을 하였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성적 언동으로 인해 진정인 정○○는 강좌 수료를 포기했고, 진정인들은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강의중 직업상담사 호칭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간호사들은 간호원보다 간호사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고, 간호사가 부족한 시국에 남자간호사라도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기억하나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 강의중 ‘NEWS’의 의미를 가르치다가 ‘바스트입니까 웨스트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야간 강의여서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와 함께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또 70대 할아버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물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그냥 손을 잘 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 강의중 유주물과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면서 진정한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꽂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울릉도 노래 역시 원래 배가 울렁거려서 뱃멀미를 한다는 노래이기 때문에 배가 울렁거리는 것을 본떠서 동작을 취한 것이지 성적 의미로 한 것은 아니었다.

4) 진정한들이 수강했던 강의는 야간 강의여서 분위기를 좀 띄울 필요가 있었고 적절한 농담이 가미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일부 수강생 가운데는 이런 농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여서 어느 정도 농담을 해도 정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가 될 줄 알았다.

다. 참고인 ○○학원

1) 진정한 정○○는 2010. 4. 13. 이메일로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강의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학원 직업능력개발센터장이 진정인을 면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후 같은 해 4. 15. 피진정인에게 향후 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진정한들이 수강하는 강의가 종료되는 같은 달 20.에 피진정인을 해촉하였으나, 그 외 피진정인에 의하여 진행 중인 주말강의는 같은 해 5. 1.까지 강의하도록 조치하였다.

2)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문제 제기 외에 이전 수강생들을 통해 피진정인의 농담이 지나친 점에 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바 있어서 이를 해당강사에게 전달하고 수업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본원 또한 강사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진정한들이 요구

하는 수강료 환불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36만원을 포함한 전액을 환불하는 것은 어렵고, 본인부담금 9만원에 대한 환불은 가능하다.

3) 진정인들이 수강한 직업상담사 2급과정은 국고보조금이 80% 지원되는 강의여서 강사 교체시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진정인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원에서도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강의시간표상에는 피진정인이 강사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직업상담사 과정 강의에 투입하지는 않았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정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각종

직업훈련기관, 학원 등이 마련한 강좌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강좌에 대해 총 훈련비의 20%는 본인인, 나머지 80%는 정부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 ○○학원은 ○○시 ○○구에 위치한 사설학원으로, 공무원시험(로스쿨·국정원·경찰·소방 등) 분야, 공인중개사 분야, 직업능력개발(회계/세무/경영, 병원교육/의료서비스, 웹디자인/쇼핑몰, 사무자동화/OA, 사진촬영/영상편집, 직업상담사, 무역/유통/물류)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이 가운데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직업상담사 과정을 2010. 3. 10.부터 4. 20.까지 19:20 ~ 22:10 시간대에 수강하였는데, 진정인 최○○는 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정○○는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수료하지 못하였다.

3) 피진정인은 ○○대학교 ○○학부 ○○전공 겸임교수로, ○○학원이 강사로 위촉한 2009. 6. ~ 2010. 5. 1. 직업상담사 2급 과정에서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 과목을 강의하였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관리 사이트인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강사 현황 및 ○○학원 강사비 관리 프로그램 캡처 화면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5월 이후 직업상담사 과정의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4)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강의 도중 칠판에 ‘W’를 쓰고 “바스트입니까 웨스트입니까”라고 묻는 사실이 있고, 70대 할아버지의 애인과 관련하여서도 진정인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하는 등 진정요지 나.항에 관한 내용은 사실로 인정된다.

5) 진정요지 다.항의 ‘무주물’ 발언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0. 4. 8. 강의에서 한 여성에게 “아가씨야 웬 무주물 맞제? 결혼 안했으니 주인이 없다 아이가? 그럼 무주물 아이가? 폼으면 임자 아이가? 주인이 찾아서 폼으면 임자지 뭐”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진정인은 ○○대학교 겸임교수이자 ○○학원과 2009. 10. 1. ~ 2010. 9. 30. 직업상담사 과정의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한 자로, 3월에는 111시수, 4월에는 70시수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피진정인은 ○○학원과 상당 기간 일정한 관련을 맺고 ○○학원의 주요업무인 수강생에 대한 강의를 수행하였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강의 도중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성희롱에 있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진정인은 강의 도중 야간 강의의 지루함을 달래면서 효과적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농담을 하였으나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희롱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진정요지 나.항, 다.항은 통상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농후한 농담으로,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강의 중 이러한 내용을 강사로부터 들었을 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언동으로 보인다.

3) 성희롱은 대부분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정인이 제시한 녹취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밖에도 피진정인은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남자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발언을 하거나 남자들은 결혼 전에 활동적으로 다 즐기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에 절대 복종하는) 일본여자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모노 입고 무릎 꿇은 자세를 흉내 내는 등 많은 성차별적 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정인들이 수강한 강좌는 취업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피진정인은 학교와 학

원에서 학생과 수강생들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에게 이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한편 ○○학원이 이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에서도 피진정인의 농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이 진정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피진정인이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과정의 강의를 맡는 등 성희롱 발생에 대한 사후조치가 충분치 않았는바, ○○학원도 강사의 수강생에 대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성희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피진정인을 강사로 위촉한 ○○학원측도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9

건강보조식품 판매지점 부장의 경리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26600 건강보조식품 판매지점 부장의 경리
성희롱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박○○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건강생활 ○○지점에서 2010. 3.부터 경리로 근무했다. 피진정인은 2010. 3.경 진정인의 손을 덥석 잡고 ‘잘 해보자.’라고 말하고 진정인에게 ‘앞니가 크다, 토끼처럼 귀엽게 생겼다. 앞니가 나와 있는데 남편과 키스는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진정인이 2010. 4.경 피진정인에게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지금 지점이 어려우니 도와달라, 잘 해보자.’라면서 진정인의 손을 잡았고, 2010. 4. 13. 피진정인이 ‘그렇게 쉽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라면서 양 팔로 진정인을 껴안아 껌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몸을 뒤로 빼자 ‘안 그만 두겠다고 말하면 봐 줄게.’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은 2010. 4. 17. 의자에 앉아있던 진정인에게 다가와 피진정인이 양손을 진정인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무릎까지 끌어내렸으며, 2010. 4.경 사무실에 뱃살안마기가 배송되었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총무는 배 안 나왔어?’라면서 피진정인의 오른손을 진정인의 배 쪽으로 내밀며 진정인의 배를 만지려고 하여 진정인은 결국 사직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0. 3. 진정인의 손을 잡고 ‘잘 해보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의 외모에 대하여 토끼처럼 귀엽다거나 ‘앞니가 나와 있는데 남편하고 키스는 어떻게? 턱을 돌려야겠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나는 성격이 꼼꼼해야 하는 경리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만 두겠다.’라고 하여 이를 만류하면서 진정인의 손을 잡고 ‘힘들더라도 바쁘니까 부탁한다.’라면서 진정인의 두 손을 잡았는데 진정인이 손을 빼기에 ‘총무님, 스킨십 싫어하는구나.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2010. 4. 13. 진정인이 신문을 건네주려고 부장실에 들어왔을 때 ‘그만 두겠다고 말한 것은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자.’라고 말했으나 진정인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거나 진정인을 껴안은 적은 없다. 2010. 4. 17. 오전 진정인이 아파서 결근을 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괜찮냐고 묻고 ‘사무실에 아이 데리고 한 번 들르라.’고 했더니 진정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진정인의 아이에게 용돈을 준 적은 있다.

2) 2010. 4.경 사무실에 뱃살안마기가 배송되어 영업사원들이 몸에 안마기를 대보고 서로 배가 나왔다면 농담할 때 진정인에게 ‘총무야, 너는 날씬하지? 똥배 나왔어? 너도 안마기 써 봐라’라고 말했는데, 당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몸을 아주 약간 앞으로 숙였지만 진정인의 배에 손을 댄 기억은 없다. 지나가던 지점장이 그 말을 듣고 잠시 후 ‘너무 심했다.’라고 말하길래 진정인에게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2010. 4. 23. 지점장이 다시 화를 내길래 지점장에게 ‘농담 한 마디 한 것 때문에 너무 하신다.’라고 말했다.

3)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손을 잡혔다고 말해서 진정인에게 손 잡은 일에 대하여 사과했다. 당시 지점장이 진정인에게 ‘부장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우리 딸 왔을 때 껴안아서 놀랐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날 저녁 진정인 남편이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충무 손을 잡고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진술, 피해자 및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향후 지점을 개설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건강생활 ○○지점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지점장으로부터 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이중 50만원을 반환하여 아르바이트 경리 직원을 고용하는 데 보탬다. 지점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 영업사원 30여 명이 일하고 있고, 진정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재고관리 및 경리업무를 하며 월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0. 3. 중순경 입사하였다.

2) 2010. 3. 피진정인이 잘 해보자면서 진정인의 손을 잡았는지, 그만 두겠다는 진정인을 만류하면서 진정인의 손을 잡았는지에 관하여 그 일시는 분명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 지점장에게 진정인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그 의도가 성적인 데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과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총무님, 스킨십 싫어하는구나.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말하며 진정인의 손을 놓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이 있었는지 자체를 의심할 여지는 없다.

3) 2010. 3. 피진정인이 자신의 얼굴을 기울이면서 진정인에게 ‘앞니가 나와 있는데 남편하고 키스는 어떻게? 턱을 돌려야겠네?’라고 물은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4) 2010. 4. 일을 그만두겠다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그렇게 쉽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껴안았다는 진정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당시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과 통화한 ○○건강생활 본사 고객만족 담당자의 진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그만두지 말라고 붙잡은 것이라며 사과했다는 진정인 남편의 진술, 피진정인이 지점장에게 ‘진정인의 등을 두드린 것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진정인에게는 ‘어깨를 두드린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지점장의 진술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마주본 상태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진정인을 양 팔로 껴안은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5) 2010. 4. 아이를 안고 의자에 앉아있는 진정인의 허벅지를 피진정인이 쓸어내렸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성인여성 평균치 신장인 진정인이 약 31개월 된 11kg 정도의 남아를 안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무릎까지 쓸어내릴 만큼 허벅지에 여유 부위가 남아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만두겠다는 진정인을 피진정인이 말리던 당시 상황과 사직을 만류하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껴안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알겠다.’라고 답한 것을 피진정인이 계속 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고맙다면서 손으로 진정인의 무릎을 짚은 정도의 접촉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진다.

6) 2010. 4.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뱃살안마기와 관련하여 말하면서 배가 나오지 않았냐고 물으며 손을 뻗어 진정인의 배를 만지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점장의 진술, 피진정인이 미안하다면서 사과했다는 진정인 남편의 진술 등을 살필 때 사실로 인정된다.

나. 판단

피진정인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 등의 사실관계, 해당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급여 일부를 부담한 점, 평소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고 전화 응대·업무 보조 등을 수행한 사실을 지점장과 피진정인이 인정한 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사직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중 진정 원인이 된 행위들이 발생한 점을 살필 때 이 사건 진정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

2) 성적 언동 등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행한 언동 중 2010. 3.경 잘 해보자면서 손을 잡았던 사실 및 같은 해 4.경 일을 그만두겠다는 진정인을 만류하자 ‘알겠다’고 대답하는 진정인에게 고맙다면서 진정인의 무릎을 짚은 사실에 관하여 피진정인의 그 행동 자체만을 두고 곧바로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언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2010. 3.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을 잡자 진정인이 손을 빼냈고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이 “총무님, 스킨십 싫어하는구나.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한바 있는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은 이미 이때부터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진정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이후에도 계속

하여 시도한 것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언동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배가 나왔냐고 물으면서 진정인의 배로 손을 내밀어 진정인의 배를 만지려는 듯 행동한 것 역시 직장 생활에서 상급자가 여성 근로자의 신체를 만지려는 듯 행동을 한 것은, 서로의 신체 접촉을 용인하는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성적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사직 의사를 밝힌 진정인을 마주본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진정인을 양팔로 껴안은 것 역시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있다. 진정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찍이 신체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피진정인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사직을 만류하기 위해 잡았다는 것은, 진정인의 거부 의사를 인지한 상태에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적인 친밀감이 전제되는 신체 접촉을 상급자인 피진정인이 강요한 것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직장 생활에서 상급자의 이와 같은 성적 언동이 하급 근로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고용관계의 특성 상 피진정인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이 진정인의 근로 환경을 악화시켰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체 접촉을 원치 않는 진정인의 의사를 인식한 상태에서 진정인의 근로의욕을 복돋고 사직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10

군수 등의 군청 계약직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결

- 【사 건】 10진정0235200 · 10진정0390700(병합)
군수 등의 군청 계약직원 성희롱
- 【진 정 인】 1. 김○○
2. 김○○
- 【피진정인】 1. 이○○
2. 박○○
- 【주 문】 1. 피진정인 이○○, 박○○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에게, 피진정인 이○○는 1,000만원,
피진정인 박○○는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3.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각 소속 직원
및 의원들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군청과 ○○군의회 의 성
희롱 방지조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해자인 진정인 김○○(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2009. 7. 1.부터 2010. 4. 26.까지 ○○군청에서 계약직원으로 근무했고, 진정인 김○○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10. 1. 29.부터 같은 해 3. 30.까지 피진정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누드사진을 찍으라는 종용을 받음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껴 직장을 그만두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

1) 2010. 1. 29. ○○군의회의 의장실에 함께 있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의장실로 불렀고,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2의 사진집을 건넸다. 피해자가 이를 들춰보다가 사진집 중에 있는 누드사진을 목격했는데, 그 때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누드사진 찍을 생각 없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사양하는 의미로 “괜찮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괜찮고 말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찍자고 하고 의장이 찍어준다는데. 찍을 거야? 찍을 거지?”라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 묻는 식으로 사진 촬영을 종용했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웠으나 직접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진 찍기엔 몸이 안 되니깐 운동할게요.”라고 대답했다. 이 때 피진정인 2도 “네 나이 때 한 번 찍어두면 좋아.”, “사진촬영 전 3일간은 속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의장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며 “라인이 예쁘다.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는 말을 했다.

2)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같은 해 2. 초중순경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다시 의장실로 불렀는데,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운동 잘하고 있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운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

하자 “왜 안 해? 사진 안 찍을 거야?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라고 되물었다. 피해자는 비로소 피진정인들의 얘기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음을 느끼고 “네, 안 찍을 거예요. 농담으로 알고 저도 농담으로 운동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라고 거부의를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 1은 “의장님 사진전에 누드사진 있으니까 한 번 보고 다시 얘기해. 나한테 못하겠으면 의장님에게라도 얘기해.”라고 말했다.

3) 같은 해 2. 23. 피해자는 거듭 의장실로부터 호출을 받아 피진정인들과 대면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사진 찍는 것 생각 해봤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라고 되물자 피진정인 1은 “왜 너랑 장난을 치냐?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라고 대답했으며, 피해자가 “사진을 안 찍겠다.”라고 하자 “아깝네, 네가 찍는다면 구경 갔을 텐데. 정말 안 찍는 거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난처한 마음에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면 부모님과 상의하고 말씀드릴게요.”라고 대답했는데, 피진정인 1은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님과 상의하냐? 그럼 꼭 상의해봐, 알았지?”라고 다그쳤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1이 먼저 의장실을 나간 후 속이 상하여 울음을 터뜨렸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네가 딸 같고 손녀 같아 그런 거지, 예뻐하고 편해서 그런 건데, 네가 울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4) 같은 해 3. 30. 외빈 영접 행사 시 피해자가 외빈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기 위하여 군청 앞 광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보더니 “상의는 해봤는가? 왜 안했어?”라고 물었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1의 계속된 종용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느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여 2010. 4. 27.부터 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0. 1.말경 의장실에서 피진정인 2와 군정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의장실로 불러서 대면한 일이 있다. 피해자는 본인의 오른쪽으로 한 자리 너머에 앉았고 당시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던 피진정인 2는 자신의 사진집을 피해자에게 건네 줬는데 피해자가 보다가 나지막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피진정인 2가 “너도 모델 한 번 해볼래?”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본인은 피해자에게 “의장님의 전시회에 가봤느냐, 한 번 가봐라, 사진 촬영하게 되면 나도 한 번 불러라.”라는 정도의 말을 건넸을 뿐이고 누구도 ‘nud 사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군 내 명소에서 사진 촬영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 날 이후로는 피해자를 따로 만나거나 마주쳐 대화를 한 일이 없다.

본 진정이 제기된 데에는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에게 정치적 위해를 가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는 2009. 군 의회에서 근무한 후 군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이에 2010. 2. 초경 의장실에서 피진정인 1과 만난 참에 피해자를 피진정인 1에게 간단히 인사 시키려고 불렀다. 피해자에게 사진집을 건네어주고 피진정인 1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사진집에 수록된 nud 사진 때문인지 킁킁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본인이 피해자에게 “모델 한 번 해볼래?”라고 물었다. 피해자는 “운동해서 몸 만들고 나면 한 번 해볼까요?”라고 대답했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어떤 운동 하느냐?”는 등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nud모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장실에 머문 시간도 5분 정도에 불과하다.

그 후 같은 해 2. 중순 또는 하순경 피해자와 청사 내에서 마주쳐 의장실로 들어오게 한 적이 있고 그 때에도 피진정인 1과 동석했다. 본인과 피진정인 1 둘 중 누가 한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누군가 “사진 찍는다더니 안 찍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사진 찍어야 해요?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해요.”라고 대답하여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님에게 물어보냐?”라고 했다. 그러나 진지하게 나눈 대화는 아니었고 잠시 스쳐가듯 나눈 얘기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의장실을 나선 직후 훌쩍훌쩍 울

었다는 얘기를 비서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왜 울었는지는 모른다. 그 이후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와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진정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8. 10.부터 2009. 6.까지 ○○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한 후 2009. 7.부터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으로 ○○군청에 채용되어 ○○실 내 자료관에서 근무했다. 피해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피진정인 1은 ○○군수로, 피진정인 2는 ○○군의회 의원 및 의장으로 재임했고, 2010. 6. 지방선거를 통해 피진정인들은 각각 군수와 군의회 의원직을 연임하였으며, 다만 피진정인 2는 새 의회 구성에 따라 의장직을 면했다.

나. 피진정인 1이 2010. 1. 29. 피해자에게 누드사진 촬영을 제의하였고 피진정인 2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의장실에서 만난 사실이 있고,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2의 사진집을 건네어 주어 피해자가 이를 들춰 보던 중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사진 모델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진 촬영을 의미한 것으로 ‘누드사진’을 언급한 바 없고, 피진정인 1은 사진 촬영을 제의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같은 날 피해자는 온라인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친구들에

게 피진정인 1이 누드사진을 찍자고 제의했으며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자 여러 번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었다고 말한 점, 2010. 4. 26. 녹취한 진정인 김○○과 피진정인 2의 대화내용에서 피진정인 2는 “군수님이 와가지고 그러지만.... ‘○○야, 몸매가 참 예쁘다, 누드 한 번 찍을래?’ 장난으로 그랬어. 세 번 네 번 ... ”이라고 말한 점, 피진정인 2는 2010. 7. 25. 방영된 ○○방송 <○○ 뉴스 플러스>의 취재에서 피진정인 1이 누드사진을 찍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에게 “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진 촬영 제의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누드사진 촬영을 제의, 중용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한편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의 언동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네 나이에 누드 찍어두면 좋다.”, “누드 촬영 3일전부터 속옷을 입지 않아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메신저 대화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나랑 의장님이 말하면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지 뭐 말이 많냐고...”라고 말했다는 메신저 기록이 있고, 실제 사진을 촬영할 피진정인 2의 동조 없이 피진정인 1이 혼자 누드사진 촬영을 제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피진정인 2도 피해자에게 누드사진 촬영 제의를 거드는 등의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2010. 2. 초 또는 중순경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누드사진 촬영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피진정인 2의 사진전에 다녀온 후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메신저 기록에도 같은 해 1. 29.이나 2. 23. 및 3. 30.의 경우와 달리 당일 대화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2010. 6. 26. 피해자의 모 조○○와 의장실 비서 정○○의 대화 녹취자료에 따르면 정○○가 피해자를 의장실에 3차례 호출한 일이 있다고 말했고, 진정인 김○○과 피진정인 2 간 대화 녹취자료에서도

피진정인 2가 2. 23.의 일을 일컬어 “아, 세 번째 불렀다고 했을 때?”라고 언급한 점에서 비록 일자를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2010. 1. 29. 과 2. 23. 간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한 차례 더 만난 일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메신저 기록 중에 사후적이기는 하나 3. 7.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주장 내용은 사실로 인정된다.

라. 2010. 2. 23.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에 대해 생각해 봤는지 묻고,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해야 한다고 대답하자 꼭 그렇게 하라고 재촉하는 등의 언동을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의장실에서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시인하며, 그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사진 찍는다더니 안 찍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해 봐야 한다.”고 하자 “나이가 몇 살인데 물어보냐?”라고 말했다고 하며,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린 사실을 전해들은 바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일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에서 피진정인 1이 위와 같은 말을 했고 피진정인 2는 울음을 터뜨린 피해자를 달래면서 ‘네가 예쁘고 편해서 스스로없이 말한 것을 가지고 왜 우냐’고 말했다고 얘기했고, 조○○와 정○○의 대화 녹취자료에서 정○○도 피진정인 2로부터 “군수님이 ○○한테 누드사진 찍으라니까 안 찍는다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냥 농담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는 피해자를 달랠 일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마. 2010. 3. 30. 피진정인 1이 군청 앞 광장에서 외빈 영접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부모님과 상의해 봤느냐?”라고 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일자에 ○○군과 결연을 맺은 중국 ○○시 당 서기 등 대표단의 영접행사가 있었으므로 그 자리에 피진정인 1이 참석했을 것임

이 분명한 점, 당일 메신저 기록에서 피해자도 외빈에 꽃다발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행사장에 나갔다가 피진정인 1과 대면했으며 그 자리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부모님하고는 상의해봤어? 안 해봤어? 왜 안했나?”라고 물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그러한 일이 있는 이후 메신저 기록에서 피해자는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와 군청 근무를 그만둬야 할지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일자에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누드사진 촬영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했는지 여부를 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바. 피해자는 2010. 4. 27.부터 군청에 출근하지 않았고 5. 10. 정식으로 사직 처리되었다. 피해자는 5. 2. 본 진정내용과 같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글을 ○○당과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다.

사. 2010. 5. 6. 피해자는 ○○지방경찰청에 본 진정과 같은 내용에 대해 피진정인 1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동 경찰청은 7. 12. 성희롱은 죄목이 없어 논외로 하고 강제추행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동 검찰청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한편 피진정인 1은 2010. 5. 6. 진정인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진정인 1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이유로 진정인들을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동 검찰청은 8. 5.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들은 피의자(본 사건 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고소인(본 사건 피진정인 1)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공공의 이익이 있고 그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와 같이 피의자의 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5. 판단

가. 동일사실에 대한 형사고소 관련 위원회 진정의 적법성

피해자는 본 진정의 제기 직후 동일한 사실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당 경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된 사실이 있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각하사유인지 검토하면, 위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성희롱은 형사상 적용할 죄목이 없어 다루지 않고 다만 그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할만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진정내용에 관해서는 기왕에 어떠한 실체적 판단도 내려진바 없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진정이 부적법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 및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직위 및 업무 등 관련성 여부

피진정인들은 군청 및 군의회의 수장으로서 ○○군의 행정과 의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했고 특히 피진정인 1은 군청 소속 직원에 대한 최종적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는 군청의

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피진정인들 간에는 직위상 상하관계가 명백하다. 또한 진정내용은 업무시간 중 의장실 또는 군청 앞 광장 등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진 언동인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2)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의 존재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2010. 1. 29.부터 같은 해 2. 23.까지 ○○군의회 의장실에서 3차례 피진정인 1, 2를 만났고, 3. 30.에는 외빈 영접행사에서 피진정인 1을 대면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피해자가 피진정인들로부터 누드사진 촬영을 제의, 종용받은 일련의 과정을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주도적으로 그러한 언동을 하였고, 피진정인 2도 그러한 언동에 일정 부분 동조하였다.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누드사진 촬영을 제의, 종용한 것이 성적 언동인지 살피건대 피진정인 2가 사진작가 수준의 활동을 해왔고 누드사진 촬영도 예술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행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누드사진 촬영이 예술행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방적 촬영 제의 및 종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의 노출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성적 함의를 갖는 언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누드사진 촬영을 요구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성적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0. 1. 29. 피진정인의 누드사진 촬영 제의에 대해 “먼저 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등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지위상 차이가 크고 자신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진정인들 앞에서 솔직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2. 23.에는 보다 명시적으로 사진촬영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진정인 1의 요구가 계속되자 울음을 터뜨렸

고, 3. 30. 피진정인 1의 언동이 있는 후 결국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메신저 기록에서도 피해자는 누드사진 촬영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보다 격앙된 불쾌감과 수치심, 불안감을 느끼게 된 정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피진정인 1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본진정 제기의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러한 의도성이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에서 살핀 이유들로 볼 때 피해자에게 미친 성적 굴욕감의 발생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미 군수로 재선된 피진정인 1 등을 상대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은 일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드사진의 촬영은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상대방에게 쉽게 제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더욱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음에도 그러한 제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심대한 성적 굴욕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성희롱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성희롱 책임에 대해 우선 향후 유사한 언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피진정인 1은 ○○군의 대표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고용자로서 피해자에게 미친 성적 언동의 양태가 비록 신체접촉의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를 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는 결과를 야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1은 ○○군청의 성희롱 방지를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스스로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일반인보다 무거

운 책임이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와 선출직 단체장에게 보장되는 특별한 지위로 인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신분상 징벌, 제재할 권한을 갖는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전할 뿐 아니라 피진정인에게 응당 가해져야 할 징벌의 의미를 가중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2도 피진정인 1에 동조하는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을 가중시켰고 피진정인 1과 함께 ○○군을 대표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토록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군청과 ○○군의회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 뿐 아니라 소속 직원에 의해 성희롱이 거듭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현실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군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책임은 다시 피진정인 1에게 귀속되므로 그 이행을 적절히 담보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그 조치가 미흡한 때에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군의 성희롱 방지조치의 적절한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0.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11

지역아동센터장의 직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 【사 건】 10진정0235400 지역아동센터장의 직원 성희롱
【진 정 인】 문○○
【피 해 자】 1. 문○○
2. 서○○
【피진정인】 박○○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이자 피해자 1인 문○○(이하 ‘피해자 1’이라고 한다)은 2010. 1. 25.부터 같은 해 4. 8.까지 ○○시 ○○구 ○○동에 소재한 ○○교회 부속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고, 피진정인은 ○○교회 담임목사이자 당시 센터장으로 재직했다. 피해자 1이 근무하던 기간 중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을 여러 차례 ○○교회 4층에 있는 목사실로 오게 한 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업무를 하게 하였는데, 그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살살 만지거나 자신의 발을 피해자 1의 다리에 갖다대곤 했다.

나. 피해자 2 서○○(이하 ‘피해자 2’라고 한다.)은 피해자 1의 후임으로 2010. 4. 20.부터 같은 해 5. 3.까지 센터에서 근무했다. 같은 해 4. 27. 센터 중등부실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 2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 2에게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 2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는 언동을 했다. 또한 같은 해 5. 3. 목사실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 2의 뒤에 바짝 붙어 서있다가 몸을 밀착한 채 겨드랑이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가쁜 숨소리와 침 삼키는 소리를 내는 언동을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 1

1)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면서 목사실로 여러 차례 불렀는데, 두 사람은 목사실 바닥 장관 구조물 위에 신발을 벗고 나란히 앉았고, 피해자 1이 낮은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로 작업을 하던 중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이 피해자 1에게 은밀하게 신체 접촉을 하곤 했다. 특히 2010. 4. 7.에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보다 뚜렷하게 이루어졌고, 피진정인이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 1은 피진정인의 행동이 이상함을 확신하고 다음날 센터를 그만두었다.

2) 그 외에도 2010. 3. 중순경 센터에 다니는 아동들과 영화관에 갔을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나란히 앉아 팔걸이 너머로 손을 뻗었으나 진정인이 몸을 옆으로 비껴 접촉을 모면한 일이 있었다.

나. 피해자 2

1) 2010. 4. 27. 오후 7시경 다른 직원들과 아동들은 모두 귀가하여 센터 중등부실에 피해자 2와 피진정인만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업무를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 2의 곁에 앉아 자신의 몸을 점점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자신의 손과 발을 피해자 2에게 가져다 대었으며 피해자 2의 앞에 놓인 서류를 집는 척하면서 피해자 2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거나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어 피해자 2와 볼을 스치기도 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수고했

다'면서 피해자 2의 속옷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물렀다.

2) 같은 해 5. 3. 피진정인은 센터 내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면서 피해자 2를 목사실로 불렀다. 피해자 2가 먼저 목사실에 올라가보니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앉아야 하는 장판 설치 공간이 있었고, 컴퓨터는 그 안의 낮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 황급히 컴퓨터를 장판 설치 공간 옆의 높은 책상 위로 옮기고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계속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몸을 밀착한 채 겨드랑이를 만지고 가쁜 숨소리와 침 삼키는 소리를 냈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는 겁에 질린 채 피진정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황급히 목사실을 빠져나왔고, 다음날부터 센터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1) 진정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들은 통상 교회 건물 1층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했지만 센터 내 인터넷 시설 불량으로 인터넷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센터에 행사가 있어 업무처리를 할 수 없거나 구청에 급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몇 차례 목사실에서 업무를 한 일이다. 그러나 목사실은 센터에서 계단을 통해 곧바로 올라갈 수 있고, 목사실에는 수시로 교인이나 아동들이 출입하므로 격리된 공간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처리에 미숙했기 때문에 그에 관해 물어보면 옆에 가서 가르쳐 주었을 뿐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다. 2010. 3. 아동들과 영화관에 갔을 때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 1의 곁이 아니라 아동들을 사이에 두고 일렬 좌석의 양 끝에 앉았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2) 목사실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구조이고 컴퓨터도 높은 책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인의 주장처럼 바닥에 나란히 앉아 몸을 밀착시키거나 엉덩이로 손을 가져다 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목사실 내에 장판을 깔아둔 일이 없고, 그러한 구조물이 나타나는 사진이 있다면 이는 목사실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인 윤○○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촬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피해자들이나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은 이유는 근무환

경에 비해 급여가 적었기 때문이고, 피해자 1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하는 행동으로 여러 번 주의를 받다가 다른 곳에 취업이 됐다고 하여 센터를 그만뒀으며, 피해자 2도 미리 별다른 얘기 없이 갑자기 근무를 그만두었다. 본 진정이 제기된 데에는 관계인 윤〇〇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윤〇〇은 센터의 운영권을 노리고 교회와 센터 운영에 대해 공언히 험담을 하는 등 분란을 조장하여 주위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빚은 끝에 권고사직 되었으며 사직할 때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인권위에 고발한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관계인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〇〇지역아동센터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에 소재한 〇〇교회 부설 아동복지시설로서 2002. 10. 설립되었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〇〇시 〇〇구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피진정인은 〇〇교회 담임목사에 겸하여 센터 설립시부터 2010. 10. 4.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했다. 센터에는 센터가 직접 채용하는 사회복지사 2명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1명, 기타 직원들이 근무했다. 피해자 1은 2010. 1. 25.부터 같은 해 4. 8.까지, 피해자 2는 2010. 4. 20.부터 같은 해 5. 6.까지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나. 센터는 ○○교회 건물 1층에, 목사실은 건물 중앙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4층에 위치하고 있다. 목사실의 실내구조에 대해 피해자들이 2010. 5. 제출한 사진자료에는 출입문 안쪽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 앉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장판 재질의 바닥재가 원래의 바닥재 위에 놓여져 있고 그러한 공간 안쪽에 책상다리로 앉은 자세에서 사용하는 높이의 책상이 있으며 그 위에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가 놓여져 있으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및 위원회가 2010. 7. 15. 등에 실지조사한 결과에서는 위와 같이 장판이 설치된 공간이 없고 의자를 놓고 사용해야 하는 업무용 책상 위에 컴퓨터가 위치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 1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1이 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목사실로 불러 업무를 하게 한 일이 있음은 사실로 확인되나,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몸을 접촉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부인하는 한편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 1도 그러한 일을 2010. 5. 27. 관계인 윤○○과 전화로 통화하기 이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피해자 1은 2010. 4. 8. 이직을 이유로 센터 근무를 그만두었다.

2010. 3. 영화관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1에게 팔을 뻗어 접촉을 시도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시 영화관에 갔던 학생들의 진술은 두 사람이 각각 일렬좌석의 양끝에 앉아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1의 주장과 상반된다.

라. 피해자 2의 주장과 관련하여, 2010. 4. 27. 센터 중등부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2에게 몸을 밀착하여 접촉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피진정인이 일체 부인하고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은 없으나 다음날 피해자 2가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관계인 윤○○, 권○○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0. 5. 3. 목사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2에게 몸을 밀착,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날 피해자 2가 목사실에서 센터로 내려와 우는 것을 관계인 권○○, 김○○가 목격하였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2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하며, 관계인 윤○○은 당일 출근하지 않았다가 권○○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였다. 같은 날 오후 8시 이후경 근처 음식점에서 피해자 1, 2와 관계인 윤○○, 권○○이 만났고, 다음날부터 피해자 2는 센터에 출

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6. 피진정인에게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 1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일체 부인할 뿐 아니라 이를 목격했거나 그러한 일이 있었던 때와 가까운 시점에 그러한 피해를 전해 들은 관계인이 없는 점에서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1) 다수 위원의 판단

피해자 2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피진정인은 부인하지만, 2010. 4. 27. 및 같은 해 5. 3.에 발생했다는 피해사실에 대해 피해자 2는 각각 다음날과 당일에 윤○○, 권○○ 및 김○○ 등 관계인들에게 알렸으며, 특히 5. 3.의 경우 관계인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드러내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혹은 관계인 윤○○ 등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관계인들이 각각 당시의 정황과 전해들은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정인과 피해자 및 관계인들이 모두 유사한 입장 혹은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목사실 바닥에 장관 구조물이 깔려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2는 실제로 장관 위에서가 아니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므로 목사실의 실내구조가 어떠했는지가 피해자 2의 주장내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2가 피진정인으로부터 어떠한 신체적 밀착 또는 접촉을 당한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요지 나.항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한, 피진정인이 피해자 2

에게 한 언동에 업무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업무 수행상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진정인과 피해자 2가 단 둘이 있는 실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한 피진정인의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향후 피진정인이 유사한 언동을 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위원 김양원의 반대의견

성희롱 사건은 확실한 증거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 당사자가 느낀 굴욕감이나 수치심, 성적 혐오감 등 피해자의 주장을 우선시 하여 판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경우나 상황 파악에 결정적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면 피해자의 주장보다 앞서서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진정 건은 어느 사건보다 사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첫 번째로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2010. 3. 중순경 센터에 다니는 아동들과 영화관에 갔을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나란히 앉아 팔걸이 너머로 손을 뻗었으나 진정인이 몸을 옆으로 비껴 접촉을 모면한 일이 있었다는 부분은 같이 갔던 아동들 대다수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아동들을 사이에 두고 의자 양 끝에 앉아 관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정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고,

둘째로 진정인은 4층 목사실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앉아야 하는 장판 설치 공간이 있었고, 컴퓨터는 그 안의 낮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으며 같이 나란히 앉아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2는 황급히 컴퓨터를 장판 설치 공간 옆의 높은 책상 위로 옮기고 의자에 앉아 일을 하다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하기 위해 목사실을 찾아 갔을 때는 이런 장판이나 책상이 없었고, 피진정인은 조사관에 의해 진정 사건의 내용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진정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방 구조를 미리 바꿀 수가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고 특히 피진정인은 3층에 있었던 장판이 4층으로 변경된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정하기 전 세밀한 조사를 통해 언제 4층 구조가 변경되었는지? 정말 3층의 광경이 4층으로 조작된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피진정인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100 명이 넘는 교인들이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 교인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수 의견은 목사실 바닥에 장판 구조물이 깔려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2는 실제로 장판 위에서가 아니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므로 목사실의 실내구조가 어떠했는지가 피해자 2의 주장내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나 만일 사실이 아닌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인은 생각된다.

셋째 진정인에게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기를 조사관이 요구했을 때 진정인은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거부했다. 대부분 진정인들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성희롱 성립을 위해 노력하는데 본 사건은 진정인보다 참고인들의 주장에 더 좌우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사진을 제출한 참고인은 피진정인과 법적인 문제로 수사를 받아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더 신중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7.

위원장	현 병 철	위원	장 향 숙	위원	김 영 혜
위원	김 태 훈	위원	황 덕 남	위원	김 양 원
위원	장 주 영	위원	한 태 식		

12

식품제조업체 상급자의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04500 식품제조업체 상급자의 성희롱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강○○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이백만 원을 지급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식품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했는데, 2010. 1. 20. 경 회식자리에서 잠시 잠이 들었을 때 같은 부서의 상급자였던 피진정인이 진정인 곁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머리를 가까이 대어 얼굴을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사한지 얼마 안된 때부터 진정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근무 외 시간에 사사로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했으며 진정인의 집 근처에 찾아와 만나줄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진정인과 사귀는 사이라는 소문을 주위에 유포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언동들로 인해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10. 1. 20.경 회식 당시 술 기운 때문에 잠시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옆 자리에 부서 상급자였던 피진정인이 앉아 있었다. 주위에 있던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원래 진정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비켜달라고 하여 진정요지와 같은 신체접촉을 했고, 이에 다른 직원들이 피진정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인을 깨웠다. 진정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상급자인 피진정인과 직장에서 늘 마주쳐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사귀는 사이이고 키스까지 했다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직장과 지역사회에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도 온라인 메신저로 ‘너는 왜 이렇게 섹시하냐?’고 하거나 업무적으로 물을 것이 있다고 하여 불러낸 뒤 갑자기 손을 잡기도 했으며 몸에 붙는 바지를 입지 말라면서 “나도 흥분되는데 남들은 더 흥분될 것 아니냐?”, “회장실에 갈 때 조심해라. 회장이 다른 여직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곤 했는데 너도 당하고 싶냐?”라는 등 듣기에 민망한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2009. 8. 입사한 후 ○○팀에서 같이 일했고 진정인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업무적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 결국 업무 문제로 진정인과 관계가 틀어져 교제를 그만두었지만 2010. 1. 회식 때까지는 아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을 보살피고자 진정요지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당시 주위 직원들이 이를 제지한 바 없다.

2) 교제기간 중 문자와 메신저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주고 받았고, 진정인과의 사이가 틀어진 후에도 진정인을 잊지 못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다. 진정인에게 달라붙는 옷을 입지 말라고 하거나 회장실에 갈 때 조심하라는 말을 한 것도 진정인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 진정인과의 교제사실을 가까운 지인 몇 사람에게 말한 일은 있고, 직장이 있는 곳이 소규모 지역이다보니 쉽게 소문이 생길 수 있지만 진정인과의 관계에 대해 소문을 퍼뜨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진정인과의 교제관계가 끝나고 진정인이 부서를 옮긴 이후에는 서로 만나거나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2010. 6. 진정인이 이미 몇 개월 지난 일로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았고 원만히 문제를 수습하자는 직속 부장의 뜻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과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적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직장 내 성희롱인 것처럼 주장하는 진정인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관계인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근무한 주식회사 ○○○는 ○○도 ○○군 ○○읍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이다. 진정인은 2009. 9.부터 2010. 9.까지, 피진정인은 2006. 9.부터 2010. 9.까지 위 직장의 본사에 근무했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직급은 각각 사원과 대리였다. 진정인은 입사한 때부터 2010. 1.까지 ○○팀에서 피진정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2) 2010. 1. 20.경 피진정인이 회식자리에서 잠든 진정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목격했다는 주위 직원의 진술이 있는 점에서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교제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한 행위였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는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진정인의 주장과 엇갈린다.

3)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착 달라붙는 바지를 입지 마라.’, ‘회장실에 갈 때 조심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사사로이 휴대전화 또는 온라인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진정인을 불러내거나 진정인의 집 근처에 찾아가 일 있는지에 대해 피진정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자료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4)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사귀는 사이였다는 소문을 유포했는지에 대해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으로 보아 풍문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그러한 풍문이 어떠한 경로로 퍼지게 됐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이 가까이 지내는 몇몇 사람들에게 진정인과 사귀는 사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5) 2010. 5.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해 항의했고, 진정 제기 이후인 같은 해 6. 17. 피진정인은 직장 상사의 중재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과하였으나 진정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해 9.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각각 퇴사했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 및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본 진정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직급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회식이 있었던 2010. 1. 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본 진정내용의 언동은 대부분 회식자리 또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피진정인은 진정내용과 같은 자신의 언동들이 진정인과의 교제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 및 정황으로 볼 때 진정인은 일관되게 피진정인의 언동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피진정인에 대해서 연애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2010. 1. 회식 당시 잠든 진정인에게 스킨십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제지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그와 상반된 관계인의 진술이 있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이 진정인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진정인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에 관한 얘기를 한 일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의도성 여부와 별개로 주위에 소문이 퍼지게 된 데에 피진정인의 언동이 일정 정도 관련성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든 그것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고 2010. 2.까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피진정인의 언동은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회식 중 잠든 진정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당시 진정인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실을 전해 들음으로써 성적 굴욕감을

느꼈기에 충분한 언동이고, 진정인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 및 진정인의 외모, 처신에 대해 언급한 것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동이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곧바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진정인과의 업무적 관계, 직장과 지역사회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진정인의 입장에서 문제제기가 쉽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며 결국 피진정인과의 성적 풍문이 퍼짐으로 인해 비로소 자신의 피해를 수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진정인의 피해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자신의 언동을 업무 관계가 아닌 사적 관계로 정당화하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별인권교육을 수강케 할 필요성이 있고,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퇴사에 이르게 한 점에서 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9.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13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 【사 건】 10진정0328900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등
- 【진 정 인】 남○○
- 【피 해 자】 1. 이○○
2. 김○○
- 【피진정인】 윤○○
-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들은 2008년부터 ○○학교의 윤○○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3학년 1반의 학생들로, 피진정인 윤○○ 교사는 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남학생 바지 위로 성기를 건드리거나, 국어수업 중 ‘고’자가 나오면 ‘고추’, ‘자’ 자가 나오면 ‘자지’라고 가르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머리를 뺨망치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본인을 “장동건 오빠, 장동건 형아”로 부르게 하는 등 특수학급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바, 징계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김○○ 학생은 부모가 장애인이지만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크게 학습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의 경우 한글을 가르칠 때 어휘 폭이 매우 적어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가령 ‘나’자를 가르칠 때 ‘나라’ 보다 ‘나비’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자나 ‘자’자를 가르칠 때 아이들 수준에 맞춰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남학생들과 장난치거나 레슬링, 말타기 등을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일부러 성기를 만진 적은 없다.

2) 2009년 경 점심 식사 이후 반 학생 중 이○○, 김○○과 악어장난감(악어 모형의 이빨을 누르면 무작위로 손가락을 깨물도록 된 장난감)으로 게임을 하면서 김○○이 다른 반에서 가져온 뿔망치로 걸리는 사람이 머리를 맞았다. 본인이 걸리면 학생들이 본인의 머리를 때렸고, 학생들이 걸리면 본인이 학생들의 머리를 때렸는데, 얼마 후 악어 장난감이 고장 나서 중단하였다. 뿔망치는 소리만 요란하지 아프지 않은 장난감이다.

3) 학년 초 담임을 맡으면서 학부모들과 친해지고자 “제가 특수교육계의 장동건입니다”라는 말을 한 적 있고, 학부모 중 한 분이 장동건 사진을 코팅해서 갖다 준 적이 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학생들이 누구냐고 물어 장동건이라고 가르쳐준 후 학생들이 장난삼아 본인을 장동건 형, 오빠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4) 2008년 1학년 입학시 오리엔테이션에서 학부모님께 정부 방침이 체

벌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교육적 목적에서 개수를 정해놓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의 체벌을 할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적이 있다. 이○○의 경우 고집을 부려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한두 대 때리고, 이를 이○○ 어머니께 알린 적은 있는데, 올해부터는 체벌은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이○○ 학생 어머니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주말동안 지루하게 내리던 비가~ 이제 멈추는 듯하네요~ 비올 때~ 당신 생각나서 ~ 은근 좋았는데ㅎ”)를 보낸 적이 있는데, 아내에게 보내려다가 핸드폰 주소록 글씨가 작아 실수로 학부모에게 보낸 것이다.

5) 본인이 담당하는 학급에 김○○라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있는데 본인이 김○○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태만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자, 이를 불쾌하게 여겨 학부모들이 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험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 관계기관의 의견(○○학교)

1) 2010. 6. 해당학급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일부 학부모들을 학교 밖에서 2차례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의 학생지도 방식에 대한 문제, 담임교사로서의 자질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학교에서 피진정인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교사와 학부모·특수교육보조원과 현격한 입장 차이, 담임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과의 갈등 문제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부모가 문제 제기의 당사자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교사에게 경위서와 시달서를 받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주었다. 또한 2010. 8. 23. 해당학급의 담임교사를 교체하였고, 피진정인의 보직을 박탈하여 현재 피진정인은 중학교 과정의 직업담당 비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다.

2) 일부 학생이 복도나 화장실에서 윤○○ 교사와 마주치는 것을 걸끄러워하는 등 2010. 11. 23.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 2011. 3. 1.부터 피진정인을 본교에서 10km 떨어진 ○○복지촌 내 ○○분교로 발령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2011학년도에는 교직원, 특수교육보조원, 차량보조원, 생활지도보조원, 방과후 중일반 교사 등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국가인

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특수교육 보조원 등에 대해 부당한 대우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3. 관련 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관계인들의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대면조사에 참여한 특수교육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학교는 지적장애인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1971년에 설립된 학교로,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이 학교에 1994. 3. 1. 채용된 이래 2008. 3. 1. ~ 2010. 8. 22. 동안 피해자들이 속해있는 학급의 담임교사를 맡았다. 3학년 1반은 정○○,

김○○, 이○○, 이○○, 송○○, 김○○ 등 총 6명이 재학 중이다.

2)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고’자가 나오면 ‘고추’, ‘자’자가 나오면 ‘자지’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은 2008년 당시 이○○, 김○○ 학생의 성기를 건드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학부모, 관련 보조교사들 및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진정인이 수업 중 전용 회초리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서너 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해당여부

어떤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의 사실관계, 해당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아동인 경우에는 그 아동의 지적 발달 수준과 장애아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진정인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피진정인은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담임을 맡고 있었던 학생들이므로 피진정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성적 언동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의 언동이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이○○와 김○○의 바지 위로 성기를 접촉한 행위는 성적 함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있고, 비록 피해 아동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이 자신

의 성기 부분을 접촉했다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견상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특수학교 교사인 피진정인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 조치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뽕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자들을 발로 차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뽕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게임의 벌칙으로 피진정인이 걸리면 피해자들이 피진정인의 머리를 뽕망치로 때리기도 하였고, 뽕망치는 소리만 크지 실제로는 별로 아프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진정인은 전용 회초리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서너 대 때린 것은 수업시간에 교육적 차원에서 수를 정해놓고 체벌한 것이고 현재는 일체 체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뽕망치로 때린 행위, 전용 회초리로 발바닥을 서너 대 때린 행위만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6.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14

직업전문학교장의 직업훈련생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29600 직업전문학교장의 직업훈련생 성희롱
【진 정 인】 박○○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김○○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 지정직업훈련시
설을 대상으로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재무관리과정 직업훈련을 받았던 직업훈련생이다. 위 학교의 교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2010. 5. 31. 밤 11시경부터 1시간가량 9회에 걸쳐 ‘같이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빨리 답장을 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인 6. 1. 오전 6시에 ‘맛있는 거 사줄 기회를 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와 진정인은 여성가장 훈련생인데, 진정인에게는 매달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나 본인의 고향에 있는 ○○여고를 졸업한 피해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10. 5. 31. 23:00경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2) 2010. 6. 1. 6:20경 피해자에게 전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미안하다, 밥 한번 사겠다’는 등의 문자를 2회 보냈으며, 이후 6. 6.까지 매일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교육훈련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2010. 6. 8. 피해자가 ○○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고용지원센터’라 함)에 민원을 제기하여 본인과 피해자, 고용지원센터 민원담당 직원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으니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5일간 무단결석하여 중도탈락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훈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4) 2010. 6. 10.경 약속했던 훈련수당 36만6천원을 입금하려 했는데 본인의 부인인 ○○직업전문학교 이사장에게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실수로 86만6천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이사장이 피해자에게 86만6천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달 11. 피해자는 이사장에게 86만6천원을 되돌려 주었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 관계기관인 ○○지방노동청 ○○지청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직업전문학교는 ○○지방노동청 ○○지청과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5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교육과정은 동력배선, 전산경리회계(2개반), 경리실무, 컴퓨터실무, 컴퓨터활용전문가 등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대표자는 피진정인의 배우자이고 학교장인 피진정인 외에 행정요원이 6명, 교사가 6명이 근무하였으며, 훈련 중인 교육생은 100여명이었다. 피진정인은 학교장으로 교사·학생·시설·장비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는 신규실업자 훈련인 재무관리과정에 여성가장 적용자 자격으로 입학하여 2010. 2. 25.부터 6. 24.까지 4개월간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이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0. 5. 31. 22:57부터 같은 날 23:55 사이에 피해자에게 ‘시험공부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파이팅 해요, 나 보면 힘들어하지 말고,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맛있는 것 사주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답변 좀 해요, 나 맥주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지금? 뭐야 맥주 한 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바보 지금 맥주 먹고 싶은데 약속 해줘, 빨리, 나 이래도 되는 거지, 나 욕하지 마, 나 자기 많이 사랑하거

든, 진짜로 답변 좀 해줘, 바보 답 안주면 나 정말 빠진다, 빨리 답 줘, 나 큰 용기 내서 프로포즈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바보 아직 답도 안주고, 왜 답 안주는 거야? 전화해도 되요? 지금'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해 6. 1. 6:20부터 같은 날 6:29분 사이에 '간밤에 화 많이 났죠? 마음 상하게 했으면 죄송해요,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죠? 오늘 밖에 날씨 무척 좋아요, 6월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맛있는거 사줄 기회를 주세요, 답장 꼭 기다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달 2.부터 6.까지 피해자에게 직업훈련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다. 2010. 6. 8. 피해자는 고용지원센터에 학교장의 피해자 성희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진정인은 고용지원센터 민원담당 직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으니 한번만 봐달라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0. 6. 2.부터 6. 8.까지 5일간 무단결석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 제1조에 따른 중도탈락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0. 6. 10.경 피진정인은 훈련수당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 86만6천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는 훈련수당이 36만6천원이고 학교장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수당이라며 피진정인에게 86만6천원을 되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마. 고용지원센터는 2010. 6. 8.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하고 피진정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2010. 6. 28. 피진정인에게는 '훈련생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중도탈락하게 한 사실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작성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피해자에게는 피진정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3개월간 훈련참여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실업자훈련(계좌제 포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청○○지청과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직업전문학교의 교장이고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 신분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성적 언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성적 굴욕감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만취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는 “나 자기 많이 사랑하거든, 진짜로 답변 좀 해줘, 나 큰 용기 내어 프로포즈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등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애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늦은 밤에 지속적으로 9회에 걸쳐 보냈다면 이러한 행위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여성가장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자격시험을 1주일 앞 둔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국 중도탈락처리 되었으며 훈련수당 36만6천원도 받지 못했다. 비록 피진정인이 피해자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지급받지 못한 훈련수당 명목으로 36만6천원을 지급하려 하였다 하나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의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의 책임자로서 교육생들이 성희롱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생에게 이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는 국비로 여성 가장이나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경미하게 처벌되는 등 성희롱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4.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15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직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 【사 건】 10진정0401000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직원 성희롱
- 【진 정 인】 조○○
- 【피 해 자】 1. 김○○
2. 박○○
3. 안○○
4. 차○○
5. 최○○
- 【피진정인】 최○○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 김○○에게 손해
배상금 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한다.
2.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사단법
인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센터의 장에게 산하 기관 및 시설
의 장들에 의한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시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시 복지관’이라 한다.)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복지관의 직원인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성희롱을 하였다.

가. 진정인에게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출산휴가 중인 2009. 2.경 밤 10시쯤 진정인의 집 앞에 찾아와 그 동안 살은 많이 났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차에 탄 채로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허리를 보듬어 안고 옆구리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2) 진정인이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후 2009. 5.부터 같은 해 8.까지 피진정인은 모유유축을 하고 나오는 진정인을 복도 등에서 마주칠 때마다 진정인의 가슴을 쳐다보며 ‘젖 많이 쫘냐?’, ‘그거 밖에 안나오냐’, ‘젖이 많이 불면 힘이 든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3) 2009년 늦가을 9:30경 ○○시에 있는 “○○○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진정인의 허리를 잡아끌어 휠체어에 앉게 하고 자신의 머리를 진정인의 등에 기대었다.

나. 피해자 김○○에게

1) 피해자 김○○가 근무하는 동안 관장실에서 결재를 받을 때마다 바로 결재를 해주지 않고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언제 데이트를 할 것인지’, ‘애인하자’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김○○에게 옆에서 결재할 자료들을 직접 넘기게 시키고 김○○의 몸을 찌르거나 감싸고 안기는 등 성적 언동을 하였다. 2009. 2. 27.부터 같은 달 28.에 있었던 ○○시 복지관 직원연수 때 피진정인은 관광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김○○를 피진정인 옆에 앉혀 손을 잡고 어

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2009. 10. 9. 저녁 당직을 마친 김○○를 집이 있는 ○○까지 차로 태워다 주면서 차 안에서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2009. 10. 12. ○○시 복지관 관장실에서 김○○가 결재를 받을 때 김○○의 엉덩이를 쳤고 김○○가 거부의를사를 표현하자 다시 불러서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같은 날 사무실에서 김○○의 배와 가슴사이를 쳤다.

2) 피진정인은 2009. 10. 11. ○○도 장애인 스킨스쿠버 체험 캠프 때 수영복 한 번 보자며 김○○의 옷을 들추었다.

3) 피진정인은 2009. 10. 13. 점심시간에 ○○시 복지관 정문 앞에서 안○○와 함께 서 있다가 마침 지나가던 김○○가 피진정인에게 인사를 하자 김○○에게 ‘○○가 오른쪽이니 넌 왼쪽해라’라고 말을 하였고, 김○○가 무슨 의미인지 피진정인에게 다시 물어보니 ‘애인하란 말이다’라고 하였다.

4) 피진정인은 2009. 10. 14. 새벽 1시에 김○○에게 전화를 하고 같은 날 퇴근 후에도 전화를 하였으며 김○○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09. 10. 15.에는 피해자 김○○에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김○○의 배를 주먹으로 두 번 때렸다. 2009. 10. 16. 김○○가 퇴근한다고 인사를 하자 퇴근하지 말고 남아 있으라고 하였고 김○○가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고 갔는데 피진정인은 김○○에게 전화를 하였고 김○○가 전화를 받지 않자 김○○에게 ‘시작도 안했지만 이제 그만 널 포기해야겠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 박○○에게

1) 피진정인은 2009. 9. 28. 피해자 박○○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박○○이 응하지 않자 ‘그럼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박○○의 손을 끌어당겨 피진정인의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박○○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2) 피진정인은 2010. 3. 5. ○○ □□으로 직원연수를 갔을 때 박○○을 위 아래로 훑어보며 ‘네도 많이 늙었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0. 2. 27. 직원연수 사전답사에서 돌아오는 승합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서 피진정인에게 안전벨트를 매주려고 움직이고 있는 피해자 안○○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마. 피진정인은 2009. 2. 27.부터 28.까지 ○○온천에서 있었던 직원연수 때 숙소에서 피해자 차○○이 자고 있는 피진정인을 깨우자 차○○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자자, 같이 자자’라고 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수시로 피해자 최○○의 허리를 손으로 휘어 감거나, 피진정인의 손으로 최○○의 손을 끌어다 만지거나, 최○○의 옷 호주머니나 바지 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곤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인에 대하여

가) ○○에서 직원들과의 모임을 가진 후 귀가하는 길에 진정인의 집이 근처에 있었고, 진정인이 출산 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진정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집 앞에서 ‘아들은 잘 크느냐’, ‘출근하려면 몸 관리도 잘하라’고 격려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팔을 내밀어 허리를 감싸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은 일체 없었다. 본인은 하반신마비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진정인의 허리를 감쌀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정○○, 강○○, 안○○ 등의 일행과 진정인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 관장실은 1층이고 직원 사무실이 2층이라 복도에서 우연히 진정인과 마주칠 기회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날 2층에 갔다가 우연히 진정인을 만났는데 진정인이 우유병을 들고 오기에 ‘유축실이 별도로 없어 많이 불편하겠다.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말은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본인이 진정인의 가슴을 쳐다봤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를 하자면 시선이 상대방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인이 진정인의 가슴을 쳐다보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편협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2009년 늦가을 노래방 회식 당시 진정인이 본인의 휠체어 팔걸이에 기대어 노래를 불렀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휘청거림으로 인해 진정인의 허리를 감싸게 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의 신체구조상 불가피한 것이었고 진정인을 성적으로 희롱하고자 한 행위가 아니다.

2) 피해자 김○○에 대하여

가) 평소에 격려차 수고했다며 피해자 김○○의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업무가 끝난 후 김○○가 집이 있는 ○○까지 태워 달라고 한 적이 있고 피해자 김○○가 집에 도착하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에 ‘너도 수고했다. 빨리 집에 들어가 쉬어라’며 어깨를 토닥인 적은 있다. 또한 결재과정에서 피해자 김○○의 엉덩이를 친 적은 없고 다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며 옆구리를 툭 친 적은 있다. 본인이 옆구리를 찌르는 버릇이 있어서 옆구리를 찔렀을 수는 있으나 김○○의 배를 치지는 않았다.

나) ○○ □□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스킨스쿠버 체험행사가 열렸는데 본인 등이 방파제에 위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서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수영 한 번 해봐라’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

다) 2009. 10. 13. 점심시간쯤 복지관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 안○○가 나와서 ‘뭐하시냐’며 본인의 오른팔에 자신의 팔을 넣어 둘렀다. 본인이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였다. 그때 김○○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관장님 뭐하십니까?’라며 다가왔고 안○○가 오른쪽 팔을 끼고 있어서 ‘오른쪽은 안○○가 끼고 있다. 왼쪽은 비었다.’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다.

라) 2009. 10. 14.에 본인이 피해자 김○○에게 전화한 기억이나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말한 기억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한다는 것이 버튼이 잘못 눌러져 피해자 김○○에게 전화가 갔을 수는 있다. 김○○은 원래 심리치료사로 일하기로 하였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자격증을 따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대학원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기에 자격증을 딸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고 김○○가 2~3년쯤 걸릴 거 같다고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연구해보자고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약속이 있다고 가버려서 ‘시작도 안했는데 포기해야겠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 박○○에 대하여

가) 피해자 박○○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도 많아 의료재활팀의 만언니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박○○에게 업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휠체어를 탄 본인이 서있는 사람의 어깨를 끌어안을 수는 없다.

나) 직원들이 버스 안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겁게 놀다가 박○○이 술을 한 잔 주면서 참 힘들다고 하기에 나이는 못 속이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4) 피해자 안○○에 대하여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으로 직원연수 사전답사를 위해 ○○에 간 적이 있다. 운전자는 강○○ 기사였고 본인은 조수석 자리에 앉았으며 안○○는 조수석 뒷자리에, 그 옆에는 신○○, 그 뒷자리에 김○○, 박○○이 앉았다. 차량 구조상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메어줄 수 없으며 얼굴에 입맞춤을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5) 피해자 차○○에 대하여

직원연수는 2008. 2. 27.~28.에 ○○온천으로, 2009. 11. 30.~31.에 ○○으로, 2010. 3. 5.~6.에 ○○으로 3번 갔으며 차○○은 출산휴가로 2010년 직원연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출산휴가 중이던 차○○에게 ○○대게 3마리를 조○○ 교사를 통해 보낸 적이 있다.

6) 피해자 최○○에 대하여

피해자 최○○이 평소 자신의 옷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기에 이용자들 보기도 안 좋으니 손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 적은 있으나 최○○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휘젓고 손을 끌어다 만진 사실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김○○가 진정인, ○○시 복지관 사무국장 정○○에게 발송한 이메일, ○○시의 피진정인 사건 처리현황 및 사건조사기록, 피진정인의 직원 성희롱 관련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인사위원회 결과,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위·수탁 협약서 사본,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조직도·정관·인사규정·장애인 복지시설수탁운영관리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복지관은 2008. 1. 2. 개관하였고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 및 행사, 장애인의 발생 예방홍보 활동, 장애인 재활상담지도, 장애인의 의료재활,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아동의 취학 전 조기교육, 장애인 체위향상,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복지관은 관장, 사무국장, 6개 팀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사단법인 ○○○○장애인협회는 ○○시로부터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3년 기간 동안 ○○시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 복지관장은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의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다. ○○시에서는 2010. 3. 29. 피진정인의 성추행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하고 피진정인, 피해자 조○○, 차○○, 김○○, 참고인 정○○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010. 4. 22. 사단법인 ○○○○장애인협회를 방문하여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조치요구를 한 적이 있다. 이후 피진정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지자 2010. 7. 5. ○○시 복지관 직원 20명은 위 징계는 너무 경미한 처분이라며 피진정인의 성희롱, 성추행, 폭언을 이유로 피진정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명부 및 진정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07. 11. 17. ○○시 복지관장으로 임명되었고 성희롱 사건 관련하여 2010. 6. 22.에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2010. 6. 28.~2010. 8. 27.) 징계를 받고 2010. 7. 26. 의원면직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이 맡고 있던 ○○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공동대표, ○○시 네트워크 상임대표직,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시 지회장, ○○시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장의 직을 사퇴하였다.

마. 진정인에 대하여

1) 진정인이 출산휴가 중이던 2009. 2.경 피진정인이 정○○ 사무국장
과 집 근처로 찾아와 진정인을 나오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나오자 차 안에
서 팔을 뻗어 진정인의 허리와 옆구리를 만졌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참고인이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므로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09. 5.~8 경 피진정인은 모유유축을 하고 나오는 진정인을 볼 때
마다 가슴을 쳐다보며 ‘젖 많이 쥘냐?, 젖이 그거 밖에 안나오냐’는 말
을 하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진정인으로부터 그러
한 사실을 전해들은 바 있고 진정인이 불쾌함을 표시하였다는 진술을
하므로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09년 늦가을 저녁 회식 후 간 ○○시 ○○○ 노래방에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휠체어 팔걸이에 앉게 하고 허리를 감싸고 진정인의 등에 얼굴
을 묻는 행동을 하였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목
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일부 참고인도 평소 직원들이 피진정인의 휠체어
팔걸이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므로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해자 김○○에 대하여

1) 2009. 10. 9. 저녁 당직을 마치고 피해자 김○○의 집이 있는 ○○
까지 차를 태워다주며 피진정인이 김○○를 강제로 끌어안은 사실에 대
하여 피진정인은 부인하나 김○○가 2009. 10. 17.에 진정인, 참고인 정
○○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1주일 전 금요일 당직 때 피진정인이 집
으로 데려다 주며 ‘나 미웠지? 이제 안심해라’라는 말을 하며 김○○를
끌어안았고 김○○가 놀라 몸을 뒤로 빼자 힘으로 당겨 피진정인의 품
에 안았다”는 내용이 있다.

2) 2009. 10. 11. ○○도 장애인스킨스쿠버 체험캠프 때 피진정인이 김
○○에게 수영복 한 번 보자며 옷을 들춘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

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09. 10. 12. 관장실에서 결재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김○○의 엉덩이를 쳐서 김○○가 거부의를사를 표현하자 다시 불러 허리를 감싸 안았고, 배와 가슴 사이를 쳤다는 진정내용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엉덩이를 친 적이 없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친 적은 있다고 주장하나 김○○가 2009. 10. 17. 진정인, 참고인 정○○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12일 월요일, 결재를 받으려는데 엉덩이를 치시더군요. ‘아 이견 안되는데요’라며 좋게 말을 하고 나가려니 다시 불러 안 되냐며 허리에 손을 대기에 좋게 넘어가려고 허리는 괜찮다고 하였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손으로 가슴 가까운 배를 2번 쳤다”는 내용이 있다.

4) 2009. 10. 13. 점심시간에 복지관 정문 앞에서 피진정인이 김○○에게 애인하라는 의미에서 ‘○○가 오른 쪽이니 넌 왼쪽해라’라고 한 진정내용에 대하여 당시 피진정인 옆에 있었던 피해자 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므로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진정인은 2009. 10. 중순 경 김○○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 김○○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며 주먹으로 배를 쳤다는 진정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박○○은 피진정인이 김○○에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배를 친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고 김○○에게서 ‘관장이 원하는 데로 안 해주기 때문에 본인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므로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2009. 10. 16. 피진정인이 김○○에게 남아있으라고 했으나 김○○가 약속이 있다며 퇴근을 하자 ‘시작도 안했지만 이제 그만 널 포기해야겠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김○○가 2009. 10. 17. 진정인 및 참고인 정○○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김○○가 그 동안의 피진정인의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그저 조용히 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8) 김○○는 2008. 1. 1.~2009. 10. 30.까지 ○○시복지관 상담사회재활팀에서 심리치료사를 근무한 뒤 퇴직하였고, 근무당시 월급은 160만원 정도였다.

사. 진정인 및 일부 참고인은 피진정인이 안내 데스크 쪽에서 피해자 박○○에게 한번 안아보자, 손 잡자라고 한 사실을 목격한 바가 있고 피진정인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주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2009년 가을 경 피진정인이 복지관 안내데스크 쪽에서 박○○에게 ‘한번 안아보자, 손 잡아보자’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 2010. 2. 27. 직원연수 사전답사를 다녀오는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진정인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안○○가 피진정인의 안전벨트를 매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안○○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춘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참고인이 피해자 안○○로부터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안전벨트를 매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므로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일부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 최○○의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당기는 것을 보았고 피진정인은 일상적으로 직원들의 손을 만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허리를 만지는 행동을 해왔다고 진술하므로 일자 불상경 피진정인이 최○○의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진정인 쪽으로 끌어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 및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 업무 관련성 여부

피진정인은 복지관장이고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복지관 직원들이므로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주체인 사용자에게 해당되며 근무시간 및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피진정인의 언동이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성적 굴욕감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진정인이 출산휴가 중인 진정인을 찾아가서 살을 많이 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진정인의 허리를 만지고 옆구리를 잡는 행동과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진정인을 자신의 휠체어 팔걸이에 강제로 앉혀 허리를 만지고 진정인의 등에 본인의 얼굴을 묻는 행동은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모유유축을 하고 나오는 진정인에게 ‘젖 많이 짜냐?, 젖이 그거 밖에 안아오냐’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남성인 피진정인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이 듣기에 불편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발언을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 성적 함의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진정인이 평소 근무 중 피해자 김○○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고 수영복 한 번 보자며 옷을 들추고, 배를 때리는 것, ‘애인하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장의 최고 책임자인

관장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소속 직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신체접촉이나 애인하라는 지시는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이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피해자 김○○의 당직 때 피해자 김○○의 집까지 차를 태워다 주면서 차 안에서 피해자 김○○를 강제적으로 겨안은 일과 결재과정에서 피해자 김○○의 엉덩이를 치고 허리에 손을 댄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 김○○가 그 동안의 피진정인의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런 언동 또한 합리적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피해자 김○○에게 퇴근 후 남아있으라고 했으나 피해자 김○○가 약속이 있다며 퇴근을 하자 피해자 김○○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시작도 안했지만 이제 그만 널 포기해야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에 관하여는, 피해자 김○○가 2009. 10. 17. 진정인, 정○○ 사무국장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에서 ‘피진정인이 김○○에게 따로 남으라고 했을 때 그간의 피진정인의 행동을 비춰보건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서웠고 이에 사정이 있어 안 된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진정인이 애인하라고 하면서 수시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는 등 김○○에게 한 언동을 고려할 때 그러한 피진정인이 김○○에게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퇴근 후 남으라고 한 것은 합리적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언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거절한 김○○에게 ‘포기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적 언동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케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진정인이 피해자 박○○에게 ‘한번, 안아보자, 손 잡아보자’라고 한 것과 피해자 안○○의 얼굴에 입을 맞춘 행위, 피해자 최○○의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행동은 상사의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언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상사의 이러한 언동은 정상적인 근무를 어렵게 하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라고 판단된다.

4) 이외에도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근무시간이 나 회식장소에서 일상적으로 직원들의 손을 만지고 허리를 만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행동 등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은 복지관의 대표자로서 직장 내에서 직원들 간에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의 성희롱을 하여 일부 직원이 직장을 그만 두게까지 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의 책임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평소 근무 중 김○○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고 수영복 한 번 보자며 옷을 들춘 것, ‘애인하라’고 한 것, 김○○의 당직 때 김○○의 집까지 차를 태워다 주면서 차 안에서 김○○를 강제로 껴안은 일, 결재과정에서 김○○의 엉덩이를 치고 허리에 손을 댄 내용, 김○○에게 퇴근 후 남으라고 하고 김○○가 남지 않고 퇴근하자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포기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피진정인이 조○○에게 살을 많이 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조○○의 허리를 만지고 옆구리를 잡는 행동과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조○○을 자신의 휠체어 팔걸이에 강제로 앉히고 허리를 만지고 조○○의 등에 본인의 얼굴을 묻는 행동, 피진정인이 박○○에게 ‘한번, 안아보자, 손잡아보자’라고 한 것과 안○○의 얼굴에 입을 맞춘 행위, 최○○의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성희롱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진정인은 이 사건 성희롱이 문제되어 2010. 7. 26. ○○시 복지관장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함께 맡고 있던 ○○시 사회복지협의회 의원,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시 지회장 등 여러 가지 직위에서 동시에 사퇴하였다. 그러나 비록 피진정인이 성희롱 행

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위와 같은 직위에서 모두 사퇴하였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그 동안 피진정인이 맡아온 여러 가지 직위가 대변하듯 지역 장애계의 유력한 인사로서 활동해 왔으며, 이러한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의 성희롱에 대한 책임의 정도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사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피진정인이 앞으로 유사한 언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피진정인은 ○○시 복지관의 대표자이자 피해자 김○○의 고용주로서 피해자 김○○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성희롱으로 피해를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김○○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직장을 그만두는 결과를 야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김○○에게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시 복지관의 상급감독단체인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와 피진정인이 대표를 맡고 있었던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시지회와 ○○시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상급감독단체인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센터의 장은 피진정인을 비롯한 산하기관 및 시설의 장들에 의해 성희롱이 거듭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는 ○○시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16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상급자의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 【사 건】 10진정0431900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상급자의 성희롱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방○○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파크’의 연구원으로 2010. 7. 7. ○○로 함께 업무상 출장을 갔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은 숙소에서 하루 밤을 묵은 후 다음 날 아침 나갈 준비를 하던 중 진정인을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진정인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2010. 7. 7. ○○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자 피진정인과 동행

하여 2박3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고 회의장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가려고 준비하는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를 안으면서 “뽀뽀 한 번만 하자.”라고 하여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으나 가볍게 넘겨들으려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갑자기 끌어안아 침실로 뒷걸음질 치게 한 후 침대에 눕혔고 진정인 위에 올라앉아 손으로 치마를 들쳤다.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진정인은 “안할게, 그냥 안고만 있을게.”라고 했고, “싫어?”하고 물어 진정인이 그렇다고 하자 비로소 힘을 풀고 진정인을 놓아주었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진정인은 남은 출장 일정을 피진정인과 동행하면서 두려움에 시달렸고 출장에서 돌아온 후 피진정인이 태연하게 직장을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 결국 직장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직후 피진정인은 사직했지만 이로써 사건이 무마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공식적인 시정조치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

출장은 행사일 직전에 갑자기 기관장을 대신하여 진정인과 함께 가게 되었다. 기관장에게만 제공되는 행사 주최 측 숙소에 묵을 수 없었고 관광 성수기여서 따로 숙소를 잡기도 어려워 평소 친분이 있던 진정인의 양해 하에 같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었으며 진정인은 펜션에 딸린 침실에서, 본인은 거실에서 잤다. 다음날 아침 몸단장을 하는 진정인을 기다리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진정인을 안고 침대에 눕히는 행위를 했다. 진정인이 완강히 거부하여 곧바로 행위를 멈췄고, 이후 진정인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나 진정인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출장 이후에도 줄곧 죄책감을 느껴 사죄하려 했으나 엄두를 내지 못하던 중 2010. 8. 6. 진정인이 직장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진정인과 대면하여 정식으로 사죄했으나 진정인은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달 8. 사직서를 제출했고 진정인에게는 전자우편과 전화로 다시 사과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근무한 ○○○○파크는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등을 위해 ○○도가 출자하여 2003. 설립되고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진정인은 2008. 12.부터 현재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2005. 5.부터 2010. 8.까지 근무하였으며, 최종 직책은 선임연구원이었다. 두 사람은 진정인의 입사 후 2010. 1.까지 ○○○○단 ○○○○팀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고, 같은 해 2.부터 진정인은 ○○○○단 ○○○○팀에서, 피진정인은 ○○○○단 ○○○○팀에서 근무했다.

2) 2010. 7. 7.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2010년 ○○○○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하여 ○○로 출장을 갔고, 출장 첫 날 ○○시 소재 행사장 인근의 펜션에서 숙박했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도 시인하고, 같은 달 10. 진정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다이어리’에도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록된 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3) 2010. 8. 6. 진정인은 ○○○○단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단장 및 다른 여성 직원 1명의 입회 하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대면한 사실이 있다. 같은 달 8. 피진정인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진정인에게 ‘○○씨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면 어떠한 처벌이 있더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 및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직급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기관을 대표한 업무 출장에 동행하였다가 신체접촉 행위가 발생한 점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의문이 없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그 양태와 정도에 있어 매우 중한 성적 언동이고, 그에 대해 진정인이 즉각적으로 거부했으며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큰 정신적 충격과 자괴감, 분노를 표현했는바,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정인이 처한 상황에서 유사한 감정을 가졌으리라 고 판단되므로 성적 굴욕감의 발생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본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미 사직했지만, 직장 내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고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진정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언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17

초등학교장의 교사 등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438800 초등학교장의 교사 등 성희롱

【진 정 인】 이○○

【피 해 자】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음

【피진정인】 이○○

【주 문】 ○○교육감에게 ○○도 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 ○○초등학교 교사 및 행정실 직원인데 피진정인으로부터 “남편 좋은 술집 보내라, 싸구려 아가씨 있는 술집에 보내니깐 이상한 병 옮겨와서 입술이 그렇지, 비싼 술집 가게 돈 좀 쥐라”, “○○이가 너무 세게 빨아서 그런 것 아니야?”, “혹시 임신한 것 아니지?”, “여드름을 없애려면 순결을 잃어야 하는 거 알지?” 등과 같은 성희롱을 당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10. 3. 중순경 피진정인은 갑자기 부장회식을 하자고 교무부장에 게 전달하였고, 출장 중이던 진정인이 선약이 있어 부장회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 부장회의 때 본인을 지칭하며 “어제 부장회식 왜 빠졌어? ○○촌년들 만난다고 안 왔냐?”라고 말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새벽 2시에도 부장들을 부르면 어디서든 달려오는데 ○○○초등학교는 이렇다”라고 하였다. 또한 2010. 3. 중순경 일요일 오전 11시경 피진정인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드라이브를 하자, 와이프는 등산을 갔다,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여 본인이 “싫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5학년 1반 교실로 전화하여 본인에게 “몸이 안 좋다더니 괜찮으냐?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며 개인적 관심을 표했다.

2) 2010. 6. 14. 피진정인은 수업실기대회에 참가한 선생님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본인에게 “이○○이가 웃으면 내가 살살 녹는다니까, 2학년 선생님 한 명은 초점 없고, 한 명은 교장실에 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4학년 부장은 몸집이 커서....”라고 하였다. 또한 2010. 6. 24. ○○□□마을 가족나들이 사전 답사를 가기 전 본인과 박○○ 교사가 피진정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진정인은 “이부장! 그런 데는 나하고 같이 들어 가야지, 같이 가는 선생님 몸도 나하고 비슷 하구만, 나라고 생각해”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출장으로 부장회식 자리에 늦게 도착한 본인에게 교감이 옆자리를 봐주면서 “여기 앉아요”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교감은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 옆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기 앉아!”라고 하였다. 회식이 끝난 후 피진정인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교감에게 “야간 운전 하려면 힘들 텐데 조심해서 서울까지 잘 가요”라고 하더니 본인을 쳐다보며 “야간 운전은 이○○이 잘하지!”라고 하였다.

3) 2010. 7. 9. ○○랜드에서 열린 교직원 친목행사 저녁식사 중 5학년 여

성교사 2명이 피진정인에게 술을 따라 주었으나 피진정인은 받은 술을 마시지 않고 “5학년에는 두 반 밖에 없어? 나머지 5학년 교사는 왜 안와!”라는 말을 서너 차례 하였고 “5학년 부장은 왜 안와!”라고 하며 5학년 부장인 본인을 2~3차례 불렀으나 본인이 끝까지 술을 따르러 가지 않자 피진정인은 23:00경 식사자리에서 나갔다. 한편 피진정인은 부장 회의나 회식자리에서 “나는 가는 곳마다 애인이 있어, 현지처가 있어”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나. 피해자 2(강○○)

2010. 5. 3. 피진정인은 교사회식 자리에서 본인의 입술이 부르튼 것을 보더니 “남편 좋은 술집 보내라, 싸구려 아가씨 있는 술집에 보내니깐 이상한 병 옮겨와서 입술이 그렇지, 비싼 술집 가게 돈 좀 쥐라!”라고 하였다.

다. 피해자 3(고○○)

피진정인은 아침 부장회의나 교사회, 회식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얼굴이 너무 크고 못생겼다. 고○○ 부장 받은 담임을 닮아서 학생들도 못생겼다. 얼굴도 못생긴 것이 □□도에 있지 왜 ○○도로 왔어, 엉덩이가 너무 커서 무게로 누르려 한다. 고○○ 부장 엉덩이는 내 엉덩이만큼이나 크다. 내가 똥똥하다고 한다고 해서 목매달지 마, 목매달래도 밧줄이 두꺼워야 해!”라고 하였다.

라. 피해자 4(구○○)

2010. 3. 초순경 피진정인이 부장회의 시 본인에게 “행정실장은 내 옆자리에 앉아! 왜 내 무릎위에 앉고 싶어? 내 무릎에는 아무나 못 앉는데, 난 돈 받고 내 무릎에 앉히는데, 술집에서도 아가씨들이 내 무릎위에 서로 앉으려고 하거든,”이라고 하였다.

마. 피해자 5(김○○), 피해자 6(이○○)

1) 일자불상경 음식점에서 피해자 5(김○○)가 “저 사랑니를 뽑아서

고기를 먹으러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그냥 가서 앉아있어”라고 하여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서는 피해자 5(김○○) 뒤에다 대고 “○○이(피해자와 교제중인 남교사)가 너무 세계 빨라서 그런 것 아니야?”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교사들 앞에서 미혼인 피해자 5(김○○)에게 “○○이 섹시”라는 표현을 써가며 둘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2) 2010. 4. 23. 피진정인은 보이스카우트 선서식이 끝나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리한 횃집에서 미혼인 피해자 5(김○○)에게 술을 권하며 “혹시 임신한 것은 아니지?”라고 하였다.

바. 피해자 7(김○○)

피진정인은 일자불상경 본인이 브로치를 달고 혼자 결재 받으러 갔을 때 “교무부장이 브로치를 달고 오니 브로치는 안보이고 가슴만 보이네”라고 하였다.

사. 피해자 8(송○○)

본인이 피진정인에게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했더니 피진정인은 “둘이(본인과 남편을 가리킴) 벗고 자니까 아이가 따라서 벗고 자다 감기가 걸렸군”라고 하였다.

아. 피해자 9(신○○)

2010. 3. 부장회의 시 홍○○이 본인에게 의자를 내어주자 피진정인이 “둘이 애인사이야? 홍부장 뭘 그렇게 챙겨줘?”라고 하였다. 또한 2010. 일자불상경 회식자리에서 본인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오자 교감이 “어머 영양사 애인 생겼어?”라고 하여 본인이 “저 예뻐진 거 모르셨어요?”라고 하였더니 피진정인이 “여자가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그런 거야?”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본인이 얼굴에 난 여드름 때문에 힘들어하자 피진정인은 “여드름을 없애려면 순결을 잃어야 하는 거 알

지?”라고 하였고 짐계를 떨어뜨리면서 놀란 본인이 “어머 제가 새가슴이라서 놀랐나 봐요”라고 하였더니, 피진정인이 본인의 가슴을 쳐다보며 “새가슴이 왜 이렇게 커! 조상새(시조새)야?”라고 하였다.

자. 피해자 10(안○○)

2010. 3. 피진정인이 회식자리에서 본인에게 “안○○ 선생님은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다. 요즈음은 주름을 펴는 곳도 많은데, 이○○ 선생은 얼굴에 주름 하나 없잖아, 이○○이 정도는 되어야 자격이 되지, 다 리미로 쪽 펴봐”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결재를 받거나 회식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주름 얘기를 하였다.

차. 피해자 11(양○○)

2010. 3. 초순경 피진정인은 전 직원 회식 자리에서 본인에게 “교감선생님은 부부관계 할 때 불 끄고 해요? 불 켜고 해요?”라고 물었고, 같은 달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 쯤 교무실에서 피진정인이 “밤에 마누라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라는 성적 농담을 하길래 본인과 교무부장이 아무 말 없이 웃었더니 그걸 본 피진정인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본인에게 “안팎으로 고장 난 분이 뭘 안다고 웃느냐”라고 하였다.

카. 피진정인

1) 진정인 이○○의 주장 관련

가) 2010. 3. 중순경 진정인이 부장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대해 ‘○○초등학교에서는 부장들을 부르면 새벽 2시에도 어디서든 달려오는데, ○○초교는 이렇다’는 등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말한 기억이 없으며 같은 해 3월 중순경 진정인이 과중한 업무로 몸살이라고 하여 약이라도 사먹으라는 안부전화를 했던 것 같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드라이브하자’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던 것 같다.

나) 2010. 6. 14. 본인이 술에 취해서 수업실기대회에 참가한 선생님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한 말이 기억나지 않으며 같은 달 24. 진정인이 ○○□□마을 가족나들이 사전 답사 건으로 박○○ 교사와 출장가기 위해 본인에게 보고할 때 잘 다녀오라는 차원에서 진정인의 주장과 비슷한 말을 하였고, 출장을 다녀온 후 회식장소에 늦게 도착한 진정인에게 옆에 앉으라고 자리를 비켜주는 교감에게 눈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옆에 앉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은 본인의 옆이 아닌 식당 입구 빈자리에 앉았으며,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진정인이 운전을 잘 한다는 말은 했으나 야간운전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다) 2010. 7. 9. 본인은 ○○ ○○문화회관에서 일주일 동안 실시한 연수에 참여한 후 직접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랜드에서 열린 교직원 친목행사장에 갔고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취기가 빨리 올라 진정인의 주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또한 다음 날 운전을 하기 위하여 교직원들보다 먼저 식당에서 나와서 익일 오전 1:30까지 스키장 슬럼프를 오가며 운동을 하였다. 한편 본인은 부장 회의나 회식자리에서 “나는 가는 곳마다 애인이 있거나 현지처가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피해자 2(강○○)의 주장 관련

2010. 5. 3. 피해자가 교사회식 자리에 좀 늦게 참석하여 본인이 피해자 주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웃으면서 “예, 그럴게요”라고 하였으며 본인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미안해요”라고 한 사실이 있다.

3) 피해자 3(고○○)의 주장 관련

본인은 부장회의나 교사회, 회식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엉덩이, 몸매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농담하였고 피해자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하였다.

4) 피해자 4(구○○)의 주장 관련

2010. 3. 초순경 첫 부장회의 때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좁은 본인 앞으로 지나가기에 공간이 넓은 뒤로 돌아서 가라는 뜻으로 피해자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다.

5) 피해자 5(김○○), 피해자 6(이○○)의 주장 관련

‘사랑니를 뽑아서 고기를 먹으러 가기 힘들 것 같다’라며 돌아서는 피해자 5(김○○) 뒤에다 대고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이가 너무 세게 빨아서 그런 것 아니야?”라는 말을 했는데, 피해자 6(이○○)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피해자 5(김○○)가 피해자 6(이○○)의 색시”라는 말은 내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전임 교사들이 붙인 말이며 자연스런 교제관계라는 차원에서 남자교사들과 같이한 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으나 성적인 의미는 전혀 없었다. 또한 2010. 4. 23. 보이스카우트 선서식이 끝나고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횃집에 피해자 5(김○○)와 피해자 6(이○○)이 좀 늦게 왔었는데 다시 곧 ○○로 가야한다기에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피해자 6(이○○)에게 사이다를 한 잔 주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신혼여행 가는 기분으로 많이 다녀요”라고 하였더니 피해자 5(김○○)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톤이 올라간 목소리로 “저 처녀 거든요”라고 하였고 본인이 웃으면서 “요새는 위낙 빨라서”라고 하였던 것 같으나 임신과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다.

6) 피해자 7(김○○)의 주장 관련

피해자가 브로치를 달고 본인에게 결재 받으러 왔을 때 옷깃에 달린 브로치가 상당히 커서 “김○○ 교무부장은 안보이고 옷깃에 단 브로치만 보인다”라고 하였으나 가슴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7) 피해자 8(송○○)의 주장 관련

피해자의 아들 조○○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다녀오느라 늦는다는 전화를 받은 후 본인이 행정실에 갔는데, 조○○가 종일반 유치원을 결석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가) 이불을 덮고 자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8) 피해자 9(신○○)의 주장 관련

2010. 3. 중순경 아침 부장회의 시 홍○○이 신○○에게 의자를 내어 주자 본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둘이 애인사이야, 뭘 그렇게 챙겨 주냐” 라고 하였고 회식자리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피해자 애인 얘기가 오고 갔는데 본인이 피해자에게 “애인 생겼느냐” “시조새”라는 말은 하였으나 그 이외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본인이 아는 시조새는 날개는 크지만 몸체는 매우 작기 때문에 피해자가 몸은 크지만 가슴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였다.

9) 피해자 10(안○○)의 주장 관련

회식자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본인에게 결재 받을 때 2~3회 정도 ‘눈가 주름은 잘 웃는 사람들에게 생기는데, 웃을 때 입을 살짝 벌리고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 하였으나 그 이외 다른 말은 하지 않았으며 교감이 피해자가 눈가 주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여 본인이 피해자에게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10) 피해자 11(양○○)의 주장 관련

2010. 3. 초순경 전 직원 회식자리가 아니라 부장회의 때 피해자에게 ‘불을 끄고 하는지, 불을 켜고 하는지’ 물어 보았으나 부부관계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같은 달 퇴근 시간 직전에 본인이 별 생각 없이 집에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밤에 마누라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안팎으로 고장 난 분이 뭘 안다고 웃느냐”라고 농담했는데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들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제출자

료, 관계기관인 ○○도교육청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1973. 3. 20.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0. 3. 1.자로 ○○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동 초등학교의 교사 및 행정실 직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0. 3. 초순경 피진정인이 첫 부장교사 회의 때 피해자 4(구○)에게 “행정실장은 내 옆자리에 앉아! 왜 내 무릎위에 앉기 싫어? 내 무릎에는 아무나 못 앉는데, 난 돈 받고 내 무릎에 앉히는데 술집에서도 아가씨들이 내 무릎위에 서로 앉으려고 하거든,”이라고 하였다.

다. 2010. 3. 초순경 피진정인은 부장교사 회의 때 피해자 11(양○○)에게 ‘불을 끄고 하는지, 불을 켜고 하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으며, 부부관계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진정인의 평소 언동을 고려할 때 ‘불을 끄고 하는지, 불을 켜고 하는지’는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진정인이 “밤에 마누라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듣고 웃는 피해자 11(양○○)에게 “안팎으로 고장 난 분이 뭘 안다고 웃느냐”라고 한 사실이 있다.

라. 2010. 3. 중순경 부장회의 시 홍○○이 피해자 9(신○○)에게 의자를 내어주자 피진정인이 “둘이 애인사이야, 뭘 그렇게 챙겨 주냐”라고 하였고, 일자불상경 피진정인이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9(신○○)에게 “애인 생겼냐” “시조새”라고 하였다.

마. 2010. 4. 23. 피진정인이 횃집에서 바로 ○○에 가야한다는 피해자 5(김○○)와 피해자 6(이○○)에게 “신혼여행 가는 기분으로 많이 다녀요”라고 하였고 피해자 5(김○○)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툰이 올라간 목소리로 “저 처녀거든요”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웃으면서 “요새는 워낙 빨라서”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2010. 5. 3. 피진정인이 교사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2(강○○)의 입술이 부르튼 것을 보더니 “남편 좋은 술집 보내라. 싸구려 아가씨 있는 술집에 보내니까 이상한 병 옮겨와서 입술이 그렇지, 비싼 술집 가게 돈 좀 쥐라!”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2010. 6. 24. 피진정인이 ○○ □□마을 가족나들이 사전 답사 건으로 출장 가는 진정인에게 “이부장! 그런데는 나하고 둘이 가야지, 같이 가는 선생님 몸도 나하고 비슷 하구만, 나라고 생각해”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부장회식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옆에 앉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진정인이 운전을 잘 한다’고 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부장회의나 회식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 3(고○○)의 얼굴이나 엉덩이, 몸매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자. 일자불상경 피진정인은 브로치를 달고 결재 받으러 간 피해자(김○○)에게 “김○○ 교무부장은 안 보이고 브로치만 보인다”라고 하였다.

차. 일자불상경 피진정인은 음식점에서 ‘사랑니를 뽑아서 고기를 먹으러 가기 힘들다’는 피해자 5(김○○)에게 ‘그냥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피해자 5(김○○)의 뒤에다 대고 “○○이 (교제중인 남교사)가 너무 세게 빨아서 그런 것 아니야?”라고 하였다.

카. 피진정인은 2010. 8. 18. ○○교육청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징계 의결되어 9. 1.자로 ○○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 받았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9.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9. 13.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된다.

진정의 원인이 된 행위발생 당시 피진정인은 ○○ ○○초등학교 교장이었고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동 학교 교사 및 행정실 직원 등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되며 진정의 원인이 된 피진정인의 발언은 회식 중 및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언동이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성적 굴욕감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건데, 피진정인이 피해자 3(고○○)에게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엉덩이가 크다’고 발언한 것과 피해자 10(안○○)에게 ‘얼굴에 주름이 많다’고 발언한 내용은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써 이것이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부장교사회회의에 참석하는 피해자 4(구○○)에게 본인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면서 ‘술집에서도 아가씨들이 본인의 무릎에 앉으려고 한다’는 등의 언동, 피진정인이 피해자 11(양○○)에게 ‘불을 끄고 하는지, 불을 켜고 하는지’ 묻고 ‘밤에 마누라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라는 언동, 피진정인이 미혼인 피해자 5(김○○)와 피해자 6(이○○)에게 ‘신혼여행 가는 기분으로 다녀오라’고 하여 피해자 5(김○○)가 본인이 처녀라고 말하자 ‘요즘은 너무 빨라서’라는 언동, 피진정인이 입술이 부르트 피해자 2(강○○)에게 ‘남편을 싸구려 아가씨 있는 술집에 보내니까 (남편이) 이상한 병을 옮겨와서 (피해자) 입술이 그렇다면서 (남편이) 비싼 술집 가게 돈 좀 쥐라’라는 언동,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출장 갈 때 ‘그런데는 나하고 둘이 가야지, 같이 가는 선생님 몸도 나하고 비슷 하구만, 나라고 생각해’라는 언동, 피진정인이 사랑니를 뽑아서 고기 먹기가 어렵다는 피해자 5(김○○)에게 ‘(피해자와 교재중인 교사) ○○이가 너무 세계 빨라서 그런 것 아니야?’라는 언동 등은 성적 함의를 가지는 발언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발언은 초등학교 교장

의 지위에서 소속 학교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상사의 이러한 발언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어렵게 하는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건대 각각의 인정사실들이 단순히 일회적, 우발적이라기보다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인정사실 외에도 평소 피진정인의 성차별적 언동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언동의 반복으로 인하여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의 대표자로서 학교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소속 교사 및 행정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의 책임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일부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교직원들을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습관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미 ○○교육청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전보 조치되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의원면직을 한 상황이어서 교장이었던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는 실익이 없다. 이에 관할 ○○교육청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6.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피해자 명단

1. 이○○(진정인)
2. 강○○
3. 고○○
4. 구○○
5. 김○○
6. 이○○
7. 김○○
8. 송○○
9. 신○○
10. 안○○
11. 양○○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480800 방송제작사 직원의 프리랜서 성희롱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김○○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분장을 해주는 프리랜서이고, 피진정인은 방송제작사 ‘○○○○’의 직원이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드라마 예고편 촬영을 위해 2010. 8. 1. 위 회사에서 구두 계약을 맺고 사전 작업을 진행한 후 오후 9시경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내 애인해라.”라고 말했고, 뒤이어 “애인이 되면 맛있는 걸 사주겠다, 페이가 더 나가도록 푸시해 보겠다.”는 말을 했다. 진정인이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고, 진정인이 자신을 피진정인에게 업무적으로 소개시켜 준 지인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느냐고 되물자

피진정인은 “그 때는 많이 바빴는데 지금은 여유로워졌다.”고 대답했다. 이에 진정인은 심한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껴 피진정인에게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업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과는 2009년부터 드라마 촬영시 함께 일한 적이 있고, 본인이 새로 촬영하는 드라마의 미술감독을 맡게 되어 진정인과 몇 차례 전화 통화 후 2010. 8. 1. 회사에서 직접 만나 근무조건을 협의하고 곧바로 캐릭터 확인 등 간단한 업무에 들어갔다. 오후 8시경 일을 마쳤는데 구내 식당이 문을 닫아 자가차량에 동승하여 외부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시 대화가 끊어지자 서먹한 분위기를 반전 시켜 보려고 진정내용과 같은 얘기를 했다. 이에 진정인이 정색을 하고 “언니에게도 그런 농담했어요? 잘 나가고 있을 때 조심하세요.”라고 하여 “그런 농담 잘 안한다,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진정인과 헤어지고 잠시 후 출근시 준비사항을 알려주려고 통화를 했는데 진정인은 “아까 한 얘기 진심이면 작품 같이 못해요.”라고 했고, 본인이 “그런 게 아닌 것 알잖느냐, 작품만 열심히 하자.”라고 하니 “알았어요, 내일 뵈요.”라고 대답하여 진정인이 이해해 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정이 넘은 무렵 다시 진정인으로부터 ‘작품 같이 못할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가 왔고, ‘무슨 일인데?’라고 묻자 진정인은 ‘유부녀에게 그런 말을 해 놓고 무슨 일이나고요?’라고 했다. 다음날 진정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문제제기한 사실을 알고 직접 만나 사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

인은 불편하다면서 만나기를 거절했다. 진정인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출연자의 분장을 해주는 비전속 근로자이고, 피진정인은 ○○○○ ○○본부 ○○팀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은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의 계열사로 ○○시 ○○동에 소재하고 있다.

2) 2010. 8. 1. 오후 진정인은 위 회사에서 피진정인과 구두로 업무 계약을 맺었고, 같은 날 오후 8시경 두 사람은 피진정인의 자가차량에 동승하여 ○○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오후 10시경 회사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피진정인이 진정내용과 같은 언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스스로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로 인정하

기에 의문이 없다.

3) 2010. 8. 2.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진정인에게 밝혔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본 건 진정내용과 같은 사실을 게재했다. 같은 달 17.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진정인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 및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드라마 제작에 관련한 분장업무에 있어 계약관계에 있었고, 계약 당일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식사를 위하여 동행한 과정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진정인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가볍게 한 말이었다고 하나, 진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이 사적인 만남을 제의하고, 이를 전제로 보수 인상 등을 언급한 것은 성적 함의를 갖는 회유 내지 요구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고용 여부, 처우 및 경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고, 야간 노상의 단 둘이 있는 차 안에서 그러한 언동이 있었다면 더욱 당혹스러웠을 것임은 분명하게 추정된다. 또한 진정인이 자신의 감정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결국 일을 그만두기에 이른 점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본 진정 피진정인의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

호가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4.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19

○○청사 청소용역회사 소장의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35400 ○○청사 청소용역회사 소장의 성희롱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송○○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인 ○○○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사조치(분리배치)를 할 것과 진정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술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 용역사업본부 ○○사업소 소속 직원으로 ○○종합
 청사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사업소 소장으로 진
 정인을 감독하는 자이다. 피진정인은 2009. 6. 30. 진정인과 식사를 한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노래하는 진정인의

뒤에서 성기를 밀착하는 성희롱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다른 여성 직원에 대해 “달라는 대로 줄 년”, “이년 저년” 등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여성 직원에 대해서도 허리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하였는바, 피진정인의 배치전환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 ○○본부 ○○청사 ○○사업소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09. 3. 조합원 박○○로부터 2008. 12. 피진정인과 식사를 한 후 피진정인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는데,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이 박○○의 뒤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박○○의 가슴을 만지며 껴안고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행위를 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씩 만나자고 제안하였다는 탄원을 듣고, “그럴 분이 아닌 것 같다, 계약을 앞둔 때니 참자”고 달래며 사건을 무마한 적이 있다.

2) 이후 2009. 6. 30. 본사와의 임금협상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알려주었는데, 피진정인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는 제안을 하여, 박○○건에 대해 확인도 할 겸 피진정인과 처음으로 단 둘이 식사를 하러 갔다. 식사 장소로 가는 도중 피진정인이 계속 “오줌 마렵다”는 얘기를 하여 식당에 들어가 화장실 위치까지 알려주었는데 피진정인은 화장실은 가지 않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마누라를 때려 두 달 쯤 잠자리도 못한다, 조합원 누구누구는 본사단장과 애인 사이다”라는 얘기를 하였다. 이후 “오줌 마렵다”는 의미가 성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말을 듣고 무척 불쾌하였다.

3)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2병 마셨는데, 본인은 2잔, 나머지는 피진정인이 마셨다. 식사를 마친 후 19:30경 피진정인이 2차로 노래방에 가자

고 제안하여 같이 갔는데, 피진정인은 본인이 노래를 부를 때 안아서 들어 올리려고 하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피했다. 또 피진정인은 본인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돈을 꺼내 가슴에 넣어주려고 하는가 하면 노래하고 있는 본인의 뒤로 와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음 날 출근한 후 동료직원인 여○○에게 “소장이 술 먹으니까 개더라”라고 말했는데, 청사 용역업체 재계약 등 내부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2010. 8. 직장 동료 여○○으로부터 피진정인이 다른 여성 조합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달라는 대로 줄 년”, “여섯 번 먹으려고 해도 다 먹을 수 있는 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전임 지부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피진정인은 박○○ 사건 발생시 당사자 앞에서는 사과하며 사표를 쓰겠다고 하면서 사건을 무마했으나 이후 사표는 쓰지 않았고, 오히려 박○○에게 포기각서를 받는가 하면, 박○○가 외롭다고 해서 위로 한번 했더니 자신을 성범죄자로 만들었다며 박○○를 꽃배이라 여론몰이를 하기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잘 기억나지 않지만 2009. 6. 30. 당시 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진정인이 본사와 임금협상을 하고 온 후 본인에게 “소장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함께 30여분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본인의 급여 인상 문제를 노조에서 거론하여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청사 용역업체 재계약을 앞두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다. 당시 식당으로 이동하는 도중 요의가 있었지만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기 싫어 참다가 “소피 좀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2) 2009년 당시 진정인과 장비담당관, 그리고 본인이 매일 아침 티타임을 가졌는데, 아마도 이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족 얘기를 하게 되었고, 혈액형이나 성격 얘기를 하다가 마누라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으며, 6. 30. 식사 자리에서 하지 않았다. 단장이 추천해서 온 직원이 1명 있었는데, 그 직원에 대해 단장님이 추천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진정한 주장과 같이 “단장과 애인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3) 노래방으로 간 후 잘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 본인의 노래방 습관에 비추어보면 진정한이 노래할 때 아는 노래가 나오면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손은 진정한이 마이크 잡은 손을 같이 잡고 다른 한 손은 진정한의 어깨나 등 정도를 잡았을 것 같다. 그때 본인의 왼쪽 다리가 진정한 오른쪽 다리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진정한은 본인보다 나이가 3살 많기 때문에 누님처럼 생각했지 이성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4) 본인은 군대생활을 30년 하였다. 그 시절 노래방에서 100점이 나오면 노래방 기기 화면에 돈을 붙이던 습관이 있는데, 진정한이 노래를 하여 점수가 잘 나오면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 진정한이 2005년 임금협상시 농성을 하는 등 강성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5) 또한 진정한 주장처럼 다른 직원에 대해 “달라는 대로 줄 년” “여섯 번 먹어도 다 먹을 수 있는 년” 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2008. 12. 여○○ 부부와 밥을 먹은 뒤 여○○의 남편이 택시를 잡는 사이 여○○의 허리를 잡고 주물렀다고 주장하나, 여○○의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본인이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갔다.

다. 참고기관 ○○○

1) 2010. 1. 1. 박○○의 진정서를 당시 지부장인 진정한을 통하여 비공개로 접수하였으며, 진정 내용을 접수한 후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피

진정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경고의 징계를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배치전환을 요구하나,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다른 소장이 부임할 경우에도 정부기관 진정 등을 이유로 배치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

2) 또한 당시 본회 노무담당자가 진정인을 면담하였는데, 진정인은 박○○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면 이번 건을 무마시키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박○○ 건은 해결되었다.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나 2008. 12.경 발생한 문제를 인사이동 시점인 2010. 1.에 제기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진정인은 노무담당자 면담 당시 박○○ 내용과 함께 피진정인이 “오줌 마렵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사실 또한 말하면서 박○○ 건만 잘 처리해주면 본인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도 한 바 있다.

3) 본회에서는 매분기마다 현장 책임자에 대한 안전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는 1982년 ○○청사 개청시부터 청사 청소 용역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09. 12. 재계약을 체결, 청사가 ○○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청소 용역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진정인은 2001. 1. 1. ○○○ ○○사업본부에 입사하였고, 피진정인은 2007. 7. 1.부터 ○○○ ○○사업본부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청사 청소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사업소에는 근로자 106명(남자 33명, 여자 75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09. 6. 30.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 언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 자신의 노래방 습관에 비추어 볼 때) 한 손은 진정인이 마이크 잡은 손을 같이 잡고 다른 한 손은 진정인의 어깨나 등 정도를 잡았을 것이고, 이때 본인의 왼쪽 다리가 진정인 오른쪽 다리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진정인의 추정일 뿐이고, 피진정인이 대질조사시 진정인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사과한 점,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식사한 다음 날 피진정인의 술버릇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는 참고인 여○○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안아서 들어 올리려고 하거나 노래를 한 진정인의 가슴에 손을 넣어주려 하고, 노래하는 진정인의 뒤에서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진정인은 2010. 1. 1.자로 제기된 진정 외 박○○와 관련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 1. 15. 경고 조치를 받았다.

라. 피진정인의 평소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0. 11. 18. ○○종합청사에서 미화원을 상대로 무작위 대면조사를 실시, 5명의 직원을 면담하였는데, 이들은 피진정인이 평소 반말을 하거나 언성을 높일 때가 종종

있고, 술자리에서 실수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정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일부 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후 60여명의 여성 직원이 위원회 조사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면서 “현 소장과 같이 일하고 싶으며, 소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 진정인과 진정인의 동조세력인 여○○ 등에 대해 ○○○에 해고를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가. 우선 이 사건의 조사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본 진정은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는 2009. 6. 30. 발생한 일로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나, 민사상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추가적으로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2009. 6. 30. 진정인은 당시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 본사와 임금협상을 마치고 피진정인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는데, 이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청소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성 직원에게 성적 언동을 행하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등 성차별적인 행태를 보였고,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던 만큼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 한편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 업무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업무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정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피진정인이 소속되어 있는 ○○○에 피진정인에 대한 인사상 분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진정인을 비롯한 진정 외 여○○, 임○○, 박○○ 등에 대해 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0.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20

물류업체 간부의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 【사 건】 10진정0567600 물류업체 간부의 성희롱 및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
- 【진 정 인】 송○○
- 【피 해 자】 박○○
- 【피진정인】 1. 정○○
2. 이○○
3. 임○○
4 △△공장장
- 【주 문】 1. 피진정인 △△공장장에 대한 진정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정○○ 및 이○○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진정인 정○○은 3백만원, 피진정인 이○○은 6백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임○○에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1 정○○ 조장은 2009. 4. 18.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 좋아 사랑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평소 “우리 둘이 자고 나서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2 이○○ 소장은 2009. 6. 18. 피해자 박○○에게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수차례 전화하였고, 2009년 작업도중 피해자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거나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 또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피해자 이름을 대며) “그년이 한번 대줄 것 같은데 영대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평소 작업지시를 할 때 반말이나 욕설을 사용하였다.

다. 피진정인3 임○○ 사장은 피해자가 위 피진정인들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내용을 보관하고, 동료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여주면서 그간의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2009. 12. 피해자에게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이 문제를 ○○노조 △△공장 사내하청지회에 알리고 사내하청지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2010. 9. 20.자로 ‘징계해고’하였다.

라. 피진정인4 △△공장장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를 통해 결과적으로 직장 내에서 관리자들에 의한 성희롱이 일상화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구제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

1) 2009. 4. 18. 정○○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나 ○○ 좋아 사랑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정○○은 조장이고 아내 한○○도 함께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 두 사람은 10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해 온 동료이고 특히 한○○은 본인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정○○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심지어 “우리 둘이 자도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는 말을 하여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 한○○은 나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나”고 거절한 적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있는데 혼자 사는 여자라 쉽게 보는 것이라는 생각에 처량한 마음이 들었다. 2009. 4. 18.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2) 이○○ 소장은 2009. 6. 18. 새벽 술 먹고 전화해서 우리 집으로 와자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오느냐고 해도 “내 맘이다”라며 막무가내였다. 아내도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싶으면서 하루 밤 사이에 세 번씩 전화를 하여 기가 막히고 황당했지만 거절하면서 참다가 마지막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통화를 시작하며 녹음했다. 큰딸이 옆에서 엄마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듣고 함께 마음 아파했다.

3) 회사 동료 중 장○○은 회사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회사 동료 류○○과 저녁을 먹던 중 이○○ 소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들어와서 합석을 했다. 저녁 먹는 내내 이○○ 소장이 입에 담기도 싫은 험오스런 말들을 했는데,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는 정력이 좋아서 힘박에 없고 짹짹 뿜으면 피가 철철 난다”고 한 말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일찍 일어났다가 다른 자리에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사를 하는 동안 일행들은 모두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본인이 가장 늦게 주점 밖으로 나왔는데 이○○ 소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본인을 보더니 “야, 이년아. 이리 와봐” 라고 하여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다. 그때 이○○ 소장과 함께 왔던 3명 중 한 사람이 집에 가려고 자기 차에 타고 있는 것이 보여 그 사람에게 “이○○ 소장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한 후 돌아왔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소장과는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서 피했고, 당일 주점에서 본인이 이○○ 소장에게 뽀뽀한 일은 없다.

4)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혼자서 속상해 하다가 힘들고 참을 수가 없어서 2009. 7.경 퇴근 후 저녁에 친한 동료직원 강○○의 집으로 가서 정○○과 이○○ 소장의 행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소연하였다. 이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녹취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후 2009. 11. 5~13. B형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병 온 한○○에게 “너의 신랑이 나에게 전화하는 것도 나에게는 스트레스고 힘들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이후 본인은 정○○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관한 것, 이○○ 소장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것을 이유로 2009. 12. 10.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보직변경”의 징계를 받았다가 2009. 12. 17. 재심을 통해 “감봉 3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받았는데, 정○○과 본인만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5) 본인은 성희롱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2010. 7. ○○노조 △△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상담하였다. 이후 사내하청지회가 이 문제를 유인물로 제작하여 배포하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2010. 9. 20.자로 징계해고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정○○

가) 피해자와는 1999년 ○○물류 전신인 ○○물류 입사 시부터 알고 지냈다. 입사 후 동료직원인 한○○과 재혼했는데, 본인 부부와 피해자, 다른 동료직원인 강○○가 친하게 지냈다. 2009년 무렵 본인 부부가 자녀 문제로 많이 다투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중간에서 화해도 시켜주고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고마워 2009. 4. 휴일에 피해자 휴대전화에 “나 ○○ 좋아 사랑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아내가 피해자와 회사에서 싸워 본인, 한○○, 피해자 등 3명이 징계를 받았고, 본인은 감봉 3월, 보직박탈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평소 피해자가 본인에게 “너는 집에 가면 ○○이 남편이지만 밖에서는 내 자기야”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사이 이기는 하나 본인은 사내커플로 아내와 함께 출근하고 같은 직장에서도 일하는데 아내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자고 나서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이○○

가) 2009. 6.경 피해자가 집에 포도주가 있다고 먹으러 오라고 제안한 일이 있었다. 이전부터 피해자가 같이 저녁 먹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매번 거절한 것이 미안하여 이날 퇴근 후 집 근처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식사하면서 술을 조금 마신 뒤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당시 늦은 시각이었지만 피해자가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여 늦어도 전화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전화를 하였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집과 본인 집이 거리가 멀어 “지금 가도 되냐, 가면 재워줄 수 있냐”고 물었던 것 같다. 늦은 밤에 전화를 한 것은 실수지만, 미안한 마음에서 전화를 한 것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다.

나) 피해자의 영덩이를 무릎으로 친 일은 없고, 직원들이 대부분 나이 많은 여성들이라 고생하신다고 팔을 주물러준 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작업지시를 할 때 반말이나 욕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게 “간밤에 힘을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딸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 그년이 한번 대줄 것 같은데 영 대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2008년 경 본인이 사석에서 술을 먹고 잠깐 다른 방에서 술을 깨기 위해 누워있었는데 누가 들어와서 본인의 몸을 더듬더니 입에 뽀뽀를 하고 나갔다. 나중에 가게 주인(○○○, ○○물류 직원)에게 물었더니 피해자라고 하였다.

3) 임○○

가) 2009. 12. 10.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관련 사안이 아니었고, 근무시간에 타 직원과 욕을 하며 싸워 근무 질서 문란으로 징계 처리한 사항이다. 당시 피해자 외에 같이 다투었던 직원

또한 동일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는 본인이 문자메시지를 동료 직원에게 보여줘서 징계를 받았고, 본인만 징계를 받았다고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2010.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 해고한 것이다.

나) 2009. 12. 인사위원회 개최 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녹취 내용 등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 면담시 전화녹취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사실이면 확인해보자,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애기한 적은 있지만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다그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는 2009. 12. 10. 1차 징계위원회 개최 시 이○○ 소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2009. 12. 14. 2차 징계위원회 개최시 문제를 제기하여 이에 대해 확인한바, 피해자가 포도주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해서 이○○ 소장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관리자로서 전화상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해 감봉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부과하였다.

라) 2009. 12. 징계절차가 종료되어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는데, 2010. 7. 피해자가 이 건을 다시 ○○노조 △△공장 사내하청지회에 제보하고 사내하청지회에서는 이 내용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유포하였다. 이후 사내하청지회는 2010. ○.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본인을 포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개인적인 명예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성폭력 업체로 낙인찍힌 것도 참았는데, 며칠 후 언론보도 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면서 징계를 결심하였다.

마)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에 따라 조사해서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직원들에게 이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분위기를 문란하게 한 후 나중에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본인을 비롯하여 남자 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도 아니었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행위를 했던 당사자가 성희롱 피해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2010. 11. 4. ○○물류를 폐업하였다.

4) 주식회사 ○○공장장

당사는 ○○물류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위원회 진정 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지하였다. ○○물류는 △△와 도급관계를 맺은 □□의 하청업체이다.

다. 참고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물류는 공장차량 인수 및 출고차량 검사를 하는 회사로 ○○의 하청업체인 당사의 하청업체이다. 2010. 8. 19. △△사내하청지회 유인물을 통해 위원회 진정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한 후 ○○물류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물류는 독립법인으로 인사노무관리에 당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진술, 2009. 12. ○○물류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물류는 ○○와 도급관계를 맺은 □□와 도급관계를 맺고 △△에서 제작한 완성차량을 점검, 세차, 검수한 후 고객에게 인수하는 업무를 맡은 회사로 2008. 7. 1. 설립하였고, △△출고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자 수는 2010. 9. 29. 현재 66명이다. ○○물류의 취업규칙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교육은 6월에 실시한다. 교육의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 내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제98조)”,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 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행한다(제99조)”,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제100조)”고 정하고 있다. ○○물류는 2009. 2.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직원들의 교육수강 서명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강사는 피진정인2 이○○ 소장이었다.

나. 피해자는 2010. 4. 18. 피진정인1 정○○ 조장으로부터 “나 ○○ 좋아 사랑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해자는 2010. 6. 18. 00:52:30 피진정인2 이○○ 소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이○○ 소장은 통화에서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나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그 밖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2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소장에게 포도주를 마시러 오라고 제안한 사실은 없다.

라. 피해자는 피진정인1 정○○과 피진정인2 이○○에 의한 성적 언동으로 힘들어하던 중 2009. 7. 직장 동료인 강○○의 집으로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하소연하고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으며 전화녹취 내용을 들려주었다. 이후 2009. 11. 5. ~ 13. 피해자는 B형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문병 온 한○○에게 남편인 정○○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한○○은 강○○를 통해 정○○이 피해자에게 위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0. 11. 15. 피해자와 한○○은 직장에서 오전 쉬는 시간 10여 분 간 이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3 임○○은 위 다툼과 관련하여 2009. 12.초 인사위원회 개최 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녹취가 불법이라며 휴대전화에 저장중인 문자메시지 및 녹취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

바. 피해자와 피진정인1 정○○은 2009. 12. 10.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피진정인2 이○○ 소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정직 6월, 보직변경”, 피진정인 정○○은 “정직 6월, 직위해제”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여 2009. 12. 17. 피진정인3 임○○ 사장이 주관한 2차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와 피진정인1 정○○은 “감봉 3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받았다.

사. 2009. 12. 10.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1

정○○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물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와 정○○ 외에 한○○도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받았던 공문과 ○○물류가 제출한 자료의 문서번호를 비교해보면, 문서번호가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과 다툰 것 때문인데 피해자와 정○○은 12. 10.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피해자가 다툼을 벌인 상대방인 한○○은 다음 날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물류 측은 2010. 10. 4. 자료제출시 한○○, 정○○에 대한 징계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다가 11. 2. ○○물류 직원 실지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제출하였다. 더욱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한○○의 징계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에도 한○○을 비롯하여 피진정인3 임○○ 사장 등은 피해자와 별도의 일자에 한○○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한○○이 2009. 12. 10. 피해자가 징계를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 피진정인2 이○○ 소장은 2009. 12. 10. 1차 인사위원회에서 피진정인3 임○○ 사장의 위임으로 인사위원장을 맡아 피해자와 피진정인1 정○○에 대해 “정직 6월, 보직변경”의 징계를 부과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피진정인1 정○○ 조장과 관련한 2차 인사위원회(12. 17. 개최)보다 3일 앞선 12. 14.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3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받았다.

자. 피해자는 2010. 7.경 △△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면서 진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상담하였고, 사내하청지회는 같은 해 8. 19. 피해자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공장 주변에 배포하였다. 피해자는 위 유인물 배포 및 사내하청지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후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한 경우 및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이유로 2010. 9. 20.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해고”통보를 받았고, 재심결과 2010. 9. 20.자로 해고되었다. 또한 피진정인2 이○○ 소장은 2010. 9. 1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2010. 9. 30.자로 징계해고 되었다.

차. 피해자는 ○○물류의 해고조치에 반발하여 2010. 10. 14.부터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날 △△공장 총무과 직원 ○○와 계약을 맺은 경비업체 소속 경비 등 30여명은 피해자에게 “△△ 땅에서 나가라”며 강제로 끌어내어 피해자는 전치4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 21. 퇴원한 피해자는 27일부터 출고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해 11. 1. 9:30경 혼자 있는 피해자를 △△정규직 관리자 및 경비업체 소속 경비들이 강제로 끌어낸 사실이 있다.

카. ○○물류는 2010. 11. 29. 현재 김○○ 대표가 업체를 인수, ○○기업으로 사명을 바꾸었고, 종전 일하던 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하였다.

타. ○○물류와 도급관계를 맺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도급관계를 맺은 주식회사 △△는 피해자 관련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취한 조치가 없다.

5. 판단

가. 피진정인1, 2가 진정요지와 같은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 및 이러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언동의 사실관계, 해당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 피진정인1 정○○ 관련

피진정인1 정○○은 피해자가 일하는 부서의 조장으로 피해자와는 업무상 위계관계가 성립하므로 피진정인의 언동은 직위를 이용한 언동

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상사가 보낸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우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해자와 피진정인 정○○ 부부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동료 직원인 강○○에게 이로 인한 괴로움을 올면서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1 정○○의 행위는 통상적인 친분의 범위를 넘어선 성적 언동이라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2 이○○ 관련

피진정인2 이○○ 역시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의 소장으로 피해자와는 업무상 위계관계가 성립하므로 피진정인의 언동은 직위를 이용한 성적언동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남성 직장 상사가 이혼한 여성에게 밤늦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그 여성의 집에 가서 자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한다면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피진정인3 임○○ 사장은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타직원과 욕을 하며 싸워 근무질서 문란으로 징계를 받았고 당시 같이 다투었던 직원도 동일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진정인1 정○○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른 동료직원에게 보여줘서 징계를 받았고, 본인만 징계를 받았다고 외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010. 9. 17. 징계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이 다투었던 한○○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2차 징계 사유를 보더라도 피진정인3이 해고라는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상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징계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기 이후에 발생하였고, 피진정인도 △△공장 사내하청지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한 후 언론사 등에서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이에 대해 해명하면서 징계를 결심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2010. 9. 20. 피해자를 징계처리한 것은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으로 판단된다.

2) 또한 피진정인3 임○○ 사장은 위원회 출석조사 시 2009. 12. 10. 피해자에 대한 최초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피해자를 불러 피진정인1 ○○○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피진정인2 ○○ 소장과와의 전화통화 녹취를 확인해 보자고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 피해자가 피진정인3 임○○ 사장에게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원 간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였음에도 피진정인3 임○○ 사장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물류 취업규칙」은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울러 피진정인3 임○○ 사장은 피해자에 대한 2009. 12. 10. 1차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피해자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녹취가 불법이라거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는 등 피진정인2 이○○의 성희롱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진정인2 이○○을 피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임하거나, 이후 피진정인2 이○○을 징계하면서도 그 사유를 성희롱 행위가 아닌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 불량”이라고 하는 등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일하고 있는 중 서류에 서명만 받아갔다고 주장하는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피진정인2 이○○ 소장이라는 사실을 볼 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3 임○○은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진정인 1, 2 소속 회사의 대표로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성희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2010. 11. 4. ○○물류는 폐업했지만 직원 전원은 “○○기업”에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승계되

었으며, 피해자 역시 성희롱 피해사실을 문제 제기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채용되었을 것이므로 성희롱 피해자이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를 이유로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피진정인3 임○○이 피해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공장장의 책임여부

진정인은 주식회사 △△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에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해온 것을 근거로 주식회사 △△와 사내하청업체와의 관계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2008두4367)을 근거로 이 건 진정에서도 주식회사 △△가 실질적인 사내하청업체인 ○○물류에서 발생한 직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는 ○○물류와 직접적인 도급계약 관계에 있지 않을뿐더러, 설령 △△가 ○○물류에 대해 실질적인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도급업체인 △△에 수급업체인 ○○물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가 피해자의 1인 시위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였다 하더라도, △△에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장장에 대한 진정은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6.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21

군청계장의 계약직 직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1진정0008300 군청계장의 계약직 직원 성희롱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조○○

【주 문】 ○○군수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처분하고 타 기관으로 전보조치 할 것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소속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7. 7. 2.부터 ○○군청에서 계약직으로 자원봉사 교육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육코디네이터 담당 계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회식자리,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희롱을 당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남편에 대한 죄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10. 3. 15. □□과 △△계 점심회식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술 버리는 사람은 벌칙으로 마셔야 한다.”며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였고, 진정인의 왼쪽 귀에 대고 “가슴 한 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당황하여 “무슨 말이냐?”라고 되묻자 피진정인은 “가슴 한 번 만지게 해주면 술 마실게.”라고 하였고 또 다시 되묻자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였다. 2010. 6. 10. 계원들끼리 저녁식사를 하던 중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 나한테 실수한 거 없으시냐?”고 피진정인에게 묻자 피진정인은 “뭘, 가슴 한 번 만져보라고 했던 것 말이야?”라고 말하였다.

2) 피진정인은 2010. 9. 9.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진정인에게 춤을 추자며 진정인의 팔을 잡아당겨 소파에서 일으킨 다음 피진정인의 뒤에 세우고 진정인의 양 팔로 피진정인의 몸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10. 12. 7. 자원봉사자 대회를 마치고 계원들끼리 간 읍내 호프집에서 진정인에게 맘에 안 든다는 식의 말을 계속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제가 늘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세요? 언제 대화 좀 하시죠?”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방 잡아서 1박 2일로 이야기 하자. 이왕 이야기 하는 거 우리 연애하면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2010. 5.부터 내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피진정인은 2010. 일자 불상 경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지칭하며) “이여사는 쌀 한 가마니도 거뜬히 버티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누군

가가 “그게 무슨 말이고?”라고 되물자 피진정인은 “이 여사는 꺾○○ (진정인의 남편)가 올라가도 잘 버티잖아.”라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0. 3. 직원 전보인사로 인해 읍내 식당에서 점심회식을 하였고 직원들끼리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에게 “가슴을 만져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2010. 9. ○○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손뼉을 치고 노래하는 정도였고 직원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의 팔을 잡아당겨 몸을 감싸 안은 기억도 없다.

3) 2010. 12. 7. 자원봉사자대회가 끝나고 호프집에서 진정인과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으나 진정인에게 “1박 2일로 날 잡아서 이야기 하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4)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이 여사는 쌀 한가마니도 거뜰히 버티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5) 피진정인은 2010. 12. 말경, 2011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방안을 만들면서 2011년도에는 업무난이도,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코디네이터와 DB코디네이터의 임금 수준을 형평에 맞게 자치단체별로 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2011년도 진정인의 임금을 조정하였고 그 결과 진정인의 임금은 월 약 3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었다. 자원봉사 교육코디네이터로 일해 오던 진정인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불만을 갖고 성희롱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자료, ○○정신재활보건센터 상담일지, ○○○○내과의원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7. 2.부터 현재까지 ○○군청에서 계약직 자원봉사 교육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09. 2.부터 2011. 1. 16.까지 ○○군청 □□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해 사전 대비 및 자원봉사 업무를 관장하였다.

다. 2010. 3. 15. 피진정인과 진정인을 포함한 ○○군청 △△계 직원들은 읍내 식당에서 점심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라. 2010. 9. 9. 저녁 피진정인과 진정인을 포함한 ○○군청 △△계 직원들은 ○○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다.

마. 2010. 12. 7. 피진정인과 진정인을 포함한 ○○군청 △△계 직원들은 자원봉사자 대회가 끝난 후 읍내 ○○○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바. 진정인은 ○○정신재활보건센터를 방문하여 피진정인의 성희롱 언동 및 이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3회 상담하였는데 상담 일자별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 3. 26. 진정인은 점심식사 자리에서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한 △△계장의 추행에 충격을 받았고 당혹스럽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사여서 화를 낼 수도 없는 처지이며 직접적인 조

치를 취하지도 못하겠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워 고민 끝에 센터를 찾아왔으며 △△계장의 언동으로 인한 고민을 하소연하였다.

2) 2010. 10. 25. 진정인은 1차 상담이후 계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으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도가 지나쳐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마시고 잦은 스킨십과 포옹 및 몸을 밀착시키며 안 놔주는 등 노골적으로 성추행을 하여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더구나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남편이 ○○이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남편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두렵다고 하였다.

3) 2010. 12. 8. 진정인은 자원봉사자대회를 마치고 저녁회식에서 참기 힘든 말을 들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언제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상사가 자원봉사대회에 대해서 수고했단 말 대신 자꾸 트집을 잡는 것 같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자 “그럼 ○○에 가서 방 잡아 놓고 연애하면서 이야기 하자.”라는 노골적인 성희롱을 모든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억울함과 분함, 그리고 자신을 우습게보고 그런 말을 한다는 생각에 치욕스러웠다고 하였다.

사. 2011. 1. 5. 진정인의 남편은 ○○군청내 휴게실에서 피진정인과 만나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음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남편에게 수차례에 걸쳐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미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였으며, 진정인의 남편이 “12월 7일 자원봉사자 대회가 끝나고 진정인에게 1박 2일 동안 연애하면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피진정인은 “(중략) 그런 일이 있다고. 너그 집 사람이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카니까 진심으로 미안하다. 미안하고 됐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남편에게 “그래 아니고, 그래 됐다. 그러면 자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못 카겠다(하겠다).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그라고(그리고) 앞으로 뭐 그런 일도 없을 기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하니까.”라고 말하였으며(중략), 진정인의 남편이 “그러면 계장님, 그거 저~ 가슴 만졌다 카는 거는 계장님, 솔직히 시인합니까?”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됐다. 시, 시인할게.”라고 대답하였다.

아. ○○내과위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0. 5. 10.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상세 불명의 기능적 창자 장애’, ‘상세 불명의 불안 장애’, ‘소화불량’, ‘속 쓰림’ 등으로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았다.

자. 참고인 2는 진정인이 전화통화를 통해 참고인 2에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슴 한 번 만져 보자.”라는 말과 “어디 잡아가지고 1박 2일로 이야기 하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3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내지 4)에 대해 이를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4와 참고인 5는 진정인의 주장요지 1) 내지 4)에 대해 이를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2), 3)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1년도에 진정인의 임금이 월 약 3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성희롱 사실을 허위로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2010. 3. 26부터 3회에 걸쳐 ○○정신재활보건센터를 찾아가 피진정인의 성희롱 사실과 이로 인한 고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는바, 진정인이 2011년도에 자신의 임금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약 10여 개월 전부터 허위로 성희롱 상담 및 고충을 호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011. 1. 5.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남편을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의 남편에게 수차례 걸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가슴을 만져보자”라고 했냐는 물음에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대답한 점, 참고인 2의 진술내용, 줄어든 진정인의 임금이 소액에 불과한 점, 동일 직장 내 상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주장할 경우 진정인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진정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요지 1), 2), 3)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정신재활보건의센터장과 진정인이 사적인 친분관계를 배경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담내용을 ○○정신재활보건의센터장이 사후에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한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성희롱을 한 장면을 목격하거나 전하여 들은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참고인 3, 4, 5는 당시 피진정인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부하직원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 당사자의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의 사실관계, 해당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정신재활보건의센터의 상담일지를 보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성적 언동으로 인해 수치스러움과 정신적 충격, 모욕감, 분노 등을 느꼈다고 토로하고 있고, 진정인이 2010. 5. 18.부터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은 내용을 보더라도 이 시기에 진정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업무, 임금 및 계약 연장 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고, 진정인의 남편이 같은 기관에서 ○○○으로 근무하고 있어 진정인은 성희롱 사실에 대해 당사자 및 외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로 인해 진정인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고, 피진정인이 자신의 지위와 진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이에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군수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처분하고 타 기관으로 전보조치 할 것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소속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인의 주장요지 4)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빗대어 “이 여사는 쌀 한가마니도 거뜰히 버티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진정부분은 사실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양 현 아

22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계약직 직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1진정0168600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직원 성희롱
 【진 정 인】 고○○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김○○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2008. 5. 6.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시립○○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는데 피진정인이 2011. 2. 26. 피해자를 세 차례 껴안고, 2011. 3. 1.에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성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피해자의 주장요지

1) 2008. 5. 6.부터 피진정인이 원장으로 있는 ○○시립○○원에 근무하면서 수용자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규 근무 외에 월 1~2회 주말 당직근무를 하는데 2011. 2. 26. 토요일 오후 당직 근무 중에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당시 갈등관계에 있었던 간호사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피해자를 두 번 더 껴안았다.

2) 2011. 3. 1. 15:10 내지 15:30분 경 사무실 문을 잠그고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중 밖에서 피진정인 소리가 들려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다. 피진정인이 “왜 문을 잠그고 있냐?”라고 하여 “일시보호자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대답하고 뒤돌아설 때 피진정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렸다.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진정인은 “묵직하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내려놓으면서 두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다른 생각을 했겠냐?”라면서 사과를 하지 않아 3. 17.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1. 2. 26.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이다.

2) 2011. 3. 1. 13:40 경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소 사무실에 생활인들이 들어오는 일이 자주 있어 사무실에 들어간 후 바로 문을 잠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동료 직원인 간호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였고 피해자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 위로하기 위해 “그냥 풀고 살아야지.”라고 말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고 들어 두 세 걸음 걸은 후에 내려놓았다.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하여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라고 잠시 언쟁을 하다가 나왔는데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것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계속 다니라는 의미로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의 진술 요지

참고인 1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제 ○○원에 출근 안 한다.”라고 하여 이유를 묻자 “원장이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간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 2는 2011. 3. 4. 사무실에서 약 5~10분 정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3. 1. 피진정인이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고, 대화 중에 “전에도 그럴 뻔한 적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그 시기와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인정사실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립○○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피진정인은 ○○년부터 현재까지 동 시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동 시설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로 2011. 5. 12. 현재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총 102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8. 5. 6.부터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일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1. 2. 26.(토), 2011. 3. 1. (화) 당직 근무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1. 3. 17.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서에 “피진정인이 2011. 3. 1. 시립○○원 사무실 문이 잠긴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여 들어 올렸다 내려놓으면서 가슴을 두 손으로 만져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성적 수치심과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고 피진정인이 이를 위로의 행위라고 답변함에 따라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 이유를 기재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진정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녹음과일에 따르면, 2011. 3. 9.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막 보듬고 만지고 다 그래요?”라고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위로한 게 그러지.”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2011. 3. 14. 피해자의 남편이 피진정인에게 여자 허리를 안고 들어 올렸다가 놓고 가슴 만지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냐고 3회에 걸쳐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 배우자의 거듭된 사과요구에 사과한다고 말하였다.

라. 피진정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나눈 대화내용에 따르면, 2011. 3. 1. 사무실에서 피진정인이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들어 올렸다는 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 당사자의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의 사실관계, 해당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

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먼저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직원으로 고용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당직근무 중 발생한 일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2011. 3. 1. 사무실에서 피진정인이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들어 올렸다는 부분은 인정사실 라.에서 보듯이 다툼이 없다.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안았다가 내려놓으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이후 피해자가 참고인 1과 참고인 2에게 이를 호소한 사실, 피해자의 남편이 피진정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할 때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사실, 피해자가 사직을 결심하기에 이르고 사직서에 사직 이유로 이를 명기한 사실, 성인을 뒤에서 안고 들어 올릴 경우 신장 및 체중 등으로 손이 가슴부위에 닿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1. 2. 26.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세 차례 껴안는 성적 언동을 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증거 또는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인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들어 올리고 가슴에 손이 닿는 것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실제 피해자는 사직서에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음’을 호소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것이 당시 동료 직원의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를 위로의 방법이라 볼 수 없고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성희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피정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어 올리고 가슴에 손이 닿은 행위는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설 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피진정인의 책임이 크므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0백만 원을 배상하고,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장에게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명령을 처분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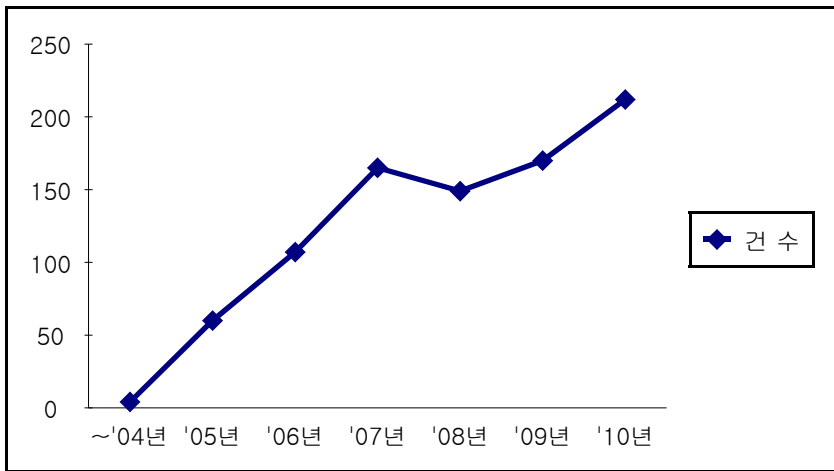
2011. 6. 10.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양 현 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및 현황 (2011. 6. 30. 현재)

1. 연도별 진정접수 건수

연 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6월)	계
건 수	4건	60건	107건	165건	149건	170건	212건	103건	970건



2. 성희롱 당사자 현황

1) 당사자의 성별

구 분	여성	남성	계
피해자	932건 (96.1%)	38건 (3.9%)	970건 (100.0%)
피진정인	25건 (2.6%)	945건 (97.4%)	970건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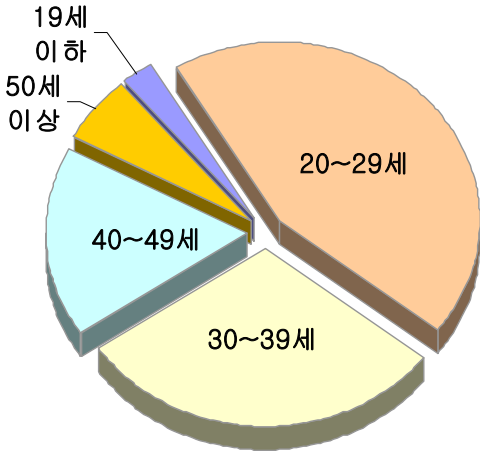
※ 남성간 성희롱 : 28건 / 여성간 성희롱 : 15건 /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 10건

2) 당사자의 국적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피해자	960건 (98.9%)	10건 (1.1%)	970건 (100.0%)
피진정인	963건 (99.3%)	7건 (0.7%)	970건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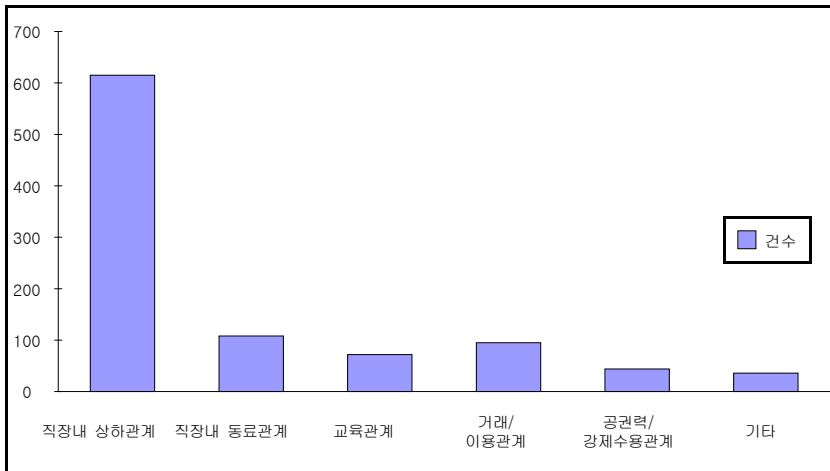
3) 피해자의 연령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
건 수	27건	357건	265건	152건	53건	854건
비 중	3.2%	41.8%	31.0%	17.8%	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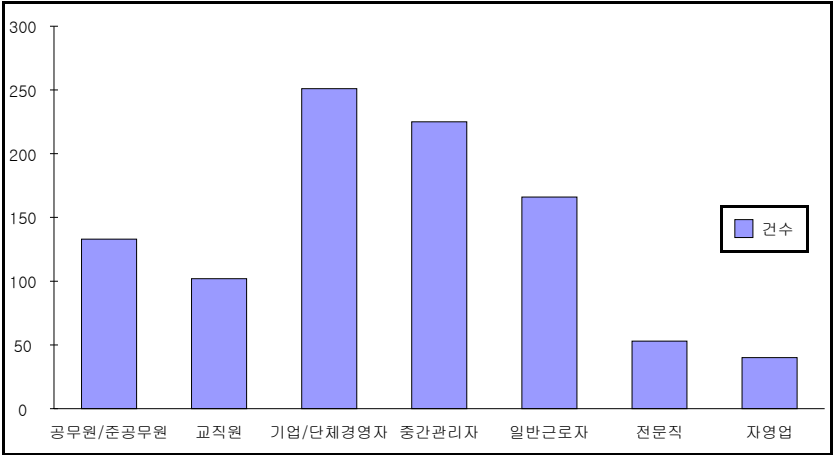
4) 당사자간 관계

구분	직장내 상하관계	직장내 동료관계	교육관계	거래/ 이용관계	공권력/ 강제수용관계	기타	계
건수	615건	108건	72건	95건	44건	36건	970건
비중	63.4%	11.1%	7.4%	9.8%	4.6%	3.7%	100.0%



5) 피진정인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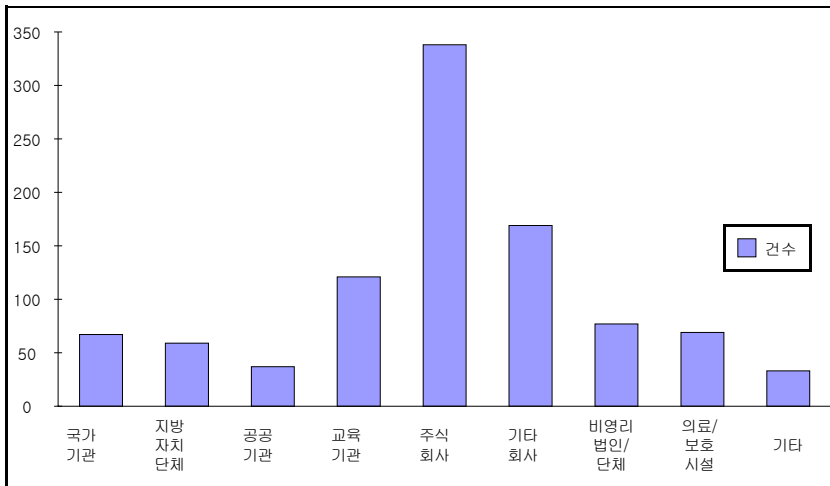
구분	공무원/준공무원	교직원	기업/단체 경영자	중간 관리자	일반 근로자	전문직	자영업	계
건수	133건	102건	251건	225건	166건	53건	40건	970건
비중	13.7%	10.5%	24.5%	25.9%	17.1%	5.6%	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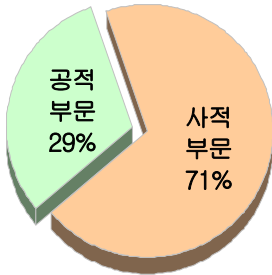
3. 성희롱 발생기관 및 장소

1) 성희롱 발생기관

구분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주식 회사	기타 회사	비영리 법인/ 단체	의료/ 보호 시설	기타	계
건수	67건	59건	37건	121건	338건	169건	77건	69건	33건	970건
비중	6.9%	6.1%	3.8%	12.5%	34.9%	17.4%	7.9%	7.1%	3.4%	100.0%



【공·사 부문간 비교】



※ 공적 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법인, 공기업), 교육기관(사교육기관 제외)

【국가기관의 유형】

검찰/경찰	일반 국가기관	구급 시설	군대	계
27건	25건	9건	6건	67건
40.3%	37.3%	13.4%	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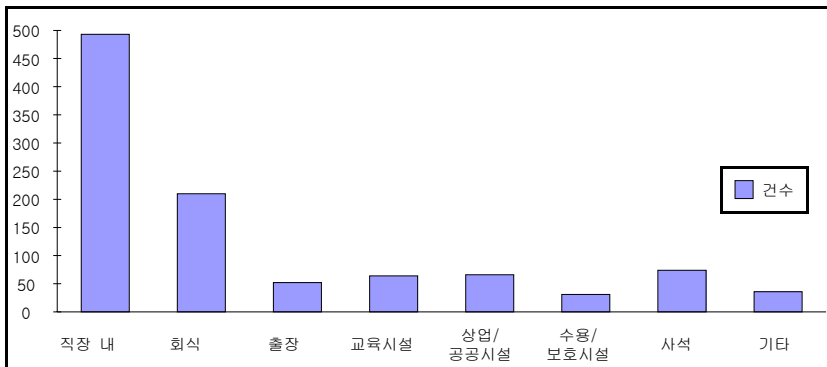
【교육기관의 유형】

각급 학교			사교육기관	계
초/중/고교	대학교(원)	특수학교		
50건	49건	6건	16건	121건
41.3%	40.5%	5.0%	13.2%	100.0%

2) 성희롱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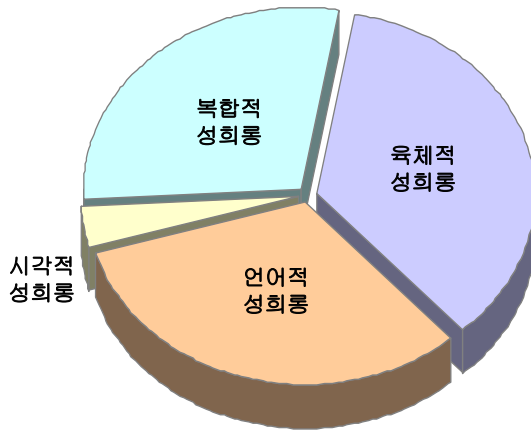
구분	직장 내	회식	출장	교육 시설	상업/공공 시설	수용/보호 시설	사석	기타	계
건수	493건	210건	52건	64건	66건	31건	74건	36건	1,026건
비중	48.1%	20.5%	5.1%	6.2%	6.4%	3.0%	7.2%	3.5%	100.0%

※ 둘 이상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중복 산정



4. 성희롱의 양상

구분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복합적 성희롱	계
건수	330건	319건	33건	288건	970건
비중	34.0%	32.8%	3.3%	2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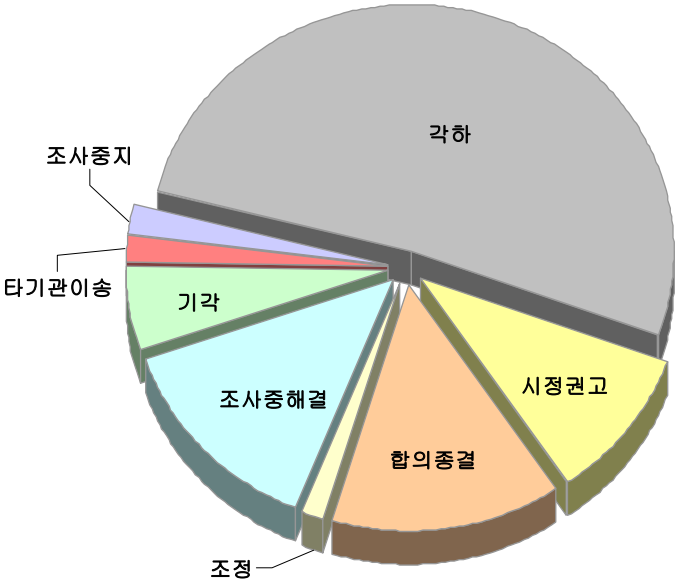


※ 복합적 성희롱의 유형

구 분	건 수
육체적+언어적	246건
언어적+시각적	21건
육체적+시각적	12건
육체적+언어적+시각적	9건

5. 성희롱 진정 처리 현황

구분	인용			조사중 해결	기각	타기관 이송	조사 중지	각하	계
	시정 권고	합의 종결	조정						
건수	97건	126건	10건	104건	68건	12건	23건	474건	914건
비중	10.6%	13.8%	1.1%	11.4%	7.4%	1.3%	2.5%	51.9%	100.0%



합의종결 현황 : 26건

(2010. 7.부터 2011. 6.까지)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1	10-진정-0186600	진정인은 구청도서실에서 공공근로로 근무함. 2010.1.경 구청도서실에 근무하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불러 컴퓨터화면으로 동물들의 성행위 장면을 보게 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2	10-진정-0269400	피해자는 ○○교육원의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피진정인은 동교육원에 교육생으로 입학함. 2010. 3. 피진정인이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워 당일 야간근무자였던 피해자는 다른 여성근무자 1명과 함께 피진정인을 제지하여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예쁜 아가씨들 왔네, 술 한잔하자, 애기 좀 하자”고 하고 피해자의 팔을 만지며 손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3	10-진정-0361900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남자가 진정인의 엉덩이, 발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있었으나 센터에서는 이를 방치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4	10-진정-0417600	진정인은 2010. 7. ○○회사 출근을 앞둔 전날 사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 피진정인이 동석함. 사장이 가고난 후 피진정인이 술 한잔하고 공원에 가자 하여 따라 갔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가슴을 만짐.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5	10-진정-0437501	진정인은 상담원으로 근무함. 2010. 7.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고객상담실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보는데 진정인의 동료인 다른 여성상담원을 껴안고 키스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미지급 급여 지급 및 취업 알선
6	10-진정-0462200	진정인은 2010. 7. 부터 부모님과 아는 사이인 피진정인 회사에서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함.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회식하며 술을 마신 후 잠깐 쉬었다 가자며 진정인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 진정인에게 팔배개를 해 달라고 하거나 고객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다가 진정인이 응하지 않자 TV에서 성인채널을 틀어 보여줌. → 합의내용 : 손해배상금 지급
7	10-진정-0483100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꽃방의 직원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꽃방에서 컴퓨터로 “남자가 여자를 씻기는 장면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이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여 거절했으며, 피진정인의 친구 부인이 왔다 갔는데 “저 여자 가슴 봤냐. 가슴이 C컵 이래” 라고 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8	10-진정-0488400	피진정인은 2010. 3. 피해자 진○○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쓰진은 몸매가 탄탄하니 보기 좋다”고 하고, 2010. 5. 피진정인과 노조집행부와의 상견례 후 피진정인은 진○○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고, 진○○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껴안으려고 함. 피해자 김○○이 신혼여행을 다녀와 프런트에서 직원1명과 얘기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김○○에게 ‘결혼해서 맨날 남자랑 자니까 좋겠다’ 하고, 옆에 있는 직원에게도 ‘맨날 남자랑 자는 거 부럽지 않냐?’고 함. → 합의내용 : 피해자들에게 사과, 고용불이익 금지 약속
9	10-진정-0527500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함. 2010. 3. 저녁 8시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고백할게 사랑해 많이. 내 머릿속은 항상 너뿐이야, 나 좀 구해줘” 라는 문자를 보냄.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10	10-진정-0549700	진정인은 ○○레스토랑에서 근무함. 부세프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가슴이 작다”고 하거나 “배가 나왔다”며 자신은 여성과 성관계할 때 여자 배가 접히는 것을 보면 짜증난다고 함. → 합의내용 : 손해배상금 지급
11	10-진정-0582000	피진정인이 2010. 2.말경 회식자리에서 진정인의 성기를 주무르고, 같은 해 8.경 회식자리에서 진정인의 성기를 아플 정도로 꼭 잡음. → 합의내용 : 피진정인의 퇴직, 진정인과 진정인 소속 회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약속
12	10-진정-0638500	피해자는 언어, 청각 장애인으로 2003년도에 ○○에서 일한 적이 있어 2010. 9. 같은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회사를 방문함. 사장인 피진정인의 집무실에서 면접 도중 잘 안 들려 피진정인을 쳐다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왼쪽 가슴을 만짐.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서면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13	10-진정-0666100	진정인은 2008. 9.부터 피진정인회사에 생산관리사원으로근무함. 2010. 9. 여직원대상 회식자리에서 피진정인은 여자리에서 술을 따라 주려는 진정인에게 두 번 입맞춤. → 합의내용 : 손해배상금 지급
14	10-진정-0689200	피진정인은 일본인 사장으로 2009. 4. 진정인과 식사자리에서 “여자들은 티팬티를 입는다는데, 불편하지 않은지”라고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하고, 이후 노래방에서 진정인의 볼에 뽐뽐하고, 사무실에서는 진정인의 어깨마사지를 함. 2009. 12. 야근 후 귀가하는 엘리베이터안에서 진정인을 껴안으며 “우리 아프지만 힘내자” 라고 하고, 이후에도 “귀여운○○(진정인)이 뽐뽐해주면 몸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서면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특별 인권교육 수강
15	10-진정-0697500	피진정인은 ○○연맹부회장이고 진정인은 체육고등학교 코치임. 2010. 8. 소년체전 관련 출장기간 중 피진정인은 숙소에서 텔레비전으로 남녀가 성관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진정인이 겹연찍어하자 “다 알면서 왜 그러냐,” “사람이 죽을 때까지 19가지 체위를 알아야 된다” 면서 같이 볼 것을 요구함. 이전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속옷 사이즈를 묻거나 가슴을 한번 만지게 해 달라고 함. → 합의내용 : 피진정인 전보
16	10-진정-0720500	진정인 입사 후 1박2일로 직원야유회를 가자는 이야기를하던 중 피진정인은 “정○○(진정인)하고 같은 방에서 자면 가고 안 그러면 안 간다”고 하고,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자세가 구부정하여 허리를 바로 펴라고 한데 대해 “보기에는 이래도 내가 밤일을 잘해” 등 발언을 자주하고, 평소 자신이 바람편 것이나 성관계에 대해 얘기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서면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17	10-진정-0738000	2010. 7. 회식 후 2차로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피진정인이 블루스를 추자고 요구하여 3~4번 거절함에도 손목을 잡아끌어 무대 어두운 곳에서 강제로 블루스를 추면서 오른손을 옆구리에 대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음. 몸을 떨자 피진정인은 “왜? 떨려? 이런 곳에 종종 와야겠네” 라고 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18	10-진정-0748700	피진정인은 2010. 11. 회식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손님들 오셨는데 접대 안 하나?” 라고 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19	10-진정-0749600	진정인은 2010. 11. ○○파견업체에 6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날 ○○정보통신 ○○영업소에 파견됨. ○○정보통신본사와 ○○영업소의 저녁회식에서 진정인의 오른쪽에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술을 따르면서 진정인의 볼에 입을 맞춘. 진정인이 몸을 돌려 피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목을 조름.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20	11-진정-0003100	진정인은 PC방을 운영중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운영한 PC방에 대한 고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방문하여 진정인에게 “내 마누라 해”, “나한테 시집이나 와” 라고 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진정인이 운영하는 PC방 방문 금지
21	11-진정-0027000	2010. 12. 회사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차안에서 피진정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기에, 진정인이 “이거 몸도 찍어져요?” 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왜, 니 가슴도 찍어줄까?” 라고 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22	11-진정-0147900	2010. 11. 피해자가 미술실 온풍기 앞에 앉아있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넌 왜 명찰이 없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름. → 합의내용 : 사과 및 재발주의
23	11-진정-0163400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콜택시직원(기사)임. 피진정인은 2010. 7. 부터 2011. 1. 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정인을 불 때마다 “한번 드라이브나 하러 가자”, “여관에 자러가자”고 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24	11-진정-0178400	진정인은 탈북여성으로 2010. 3. ○○금속에 입사함. 공장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탈북여성이라고 업신여기고 수시로 입에 담기 힘든 인격모독적인 말을 했는데, 어느 날은 진정인이 머리를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출근하자 피진정인은 “머리에 빨간물을 들었는데 밑에 털은 빨간물 안 들었냐?” 라고 함. → 합의내용 : 진정인에게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
25	11-진정-0252000	피해자는 태양열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진정인은 같은 부서 과장임. 유부남인 피진정인은 평소에도 성인음란 사이트 또는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2011. 3.경에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어도 상관없으니 사귀자. 나하고 놀면 당신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로 데리고 가 줄게” 라고 함. → 합의내용 :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사과
26	11-진정-0276400	진정인은 ○○개인택시조합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임. 조합소속기사인 피진정인은 2011. 4.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손해배상금 지급

판 권
소 유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4집】

2011년 11월 21일 인쇄

2011년 11월 21일 발행

발 행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편 집 조사국 차별조사과

인 쇄 도서출판 한학문화

ISBN 978-89-6114-239-7 94330

978-89-6114-238-0 (세트)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 제4집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9층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239-7 94330
978-89-6114-238-0 (세트)